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매뉴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Contents

I 보건의료자원관리 개요

1. 보건의료자원 현황관리 및 신고일원화	6
1-1 보건의료자원 현황관리	6
1-2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7
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시스템	9
2-1 통합신고포털 시스템 화면 구성	9
2-2 자주하는 질문(FAQ)	17

II 요양기관 일반현황 신고

1. 요양기관 기본 현황 신고	20
1-1 개설	20
1-2 지급계좌 신고	29
1-3 변경	34
1-4 휴업 및 폐업	41
1-5 자주하는 질문(FAQ)	45

III 인력 · 시설 · 장비 신고

1. 요양기관 인력 현황 신고	48
1-1 요양기관 인력 현황 신고	48
1-2 자주하는 질문(FAQ)	61
2. 요양기관 시설 현황 신고	62
2-1 시설 현황 신고	62
2-2 자주하는 질문(FAQ)	69

3. 요양기관 장비 현황 신고	71
3-1 장비 현황 신고	71
3-2 의료장비 바코드 심별 온라인 발급	80
3-3 자주하는 질문(FAQ)	82

VI 항목별 신고

1. 특수운영현황	86
1-1 특수운영현황 신고	86
1-2 자주하는 질문(FAQ)	89
2. 차등제	92
2-1 차등제 신고	92
2-2 자주하는 질문(FAQ)	95
3. 식대	96
3-1 식대(입원환자식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96
3-2 자주하는 질문(FAQ)	103

V 기타

1. 신고일원화 민원사무별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106
2. 관련 법령	110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매뉴얼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I

보건의료자원관리 개요

1. 보건의료자원 현황관리 및 신고일원화
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시스템

HIRA

1. 보건의료자원 현황관리 및 신고일원화

1-1 보건의료자원 현황관리

개요

‘보건의료자원 현황관리’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거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연계 받아 요양기관의 일반사항, 인력·시설·장비 현황을 등록·관리하는 업무임(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설치·운영)

보건의료
자원관리
현황

- (일반현황)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명, 종별구분, 진료과목 등 43종에 대한 현황을 관리
- (의료인력) 의료인력 14종의 세부인적사항 및 의료인력 27종의 인원 수를 신고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법 상의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관리
- (의료시설)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입원실 등의 병실 및 병상 수와 기타 시설의 현황을 관리
- (의료장비) 의료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191종의 장비를 신고·관리하고 있으며, 23종의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바코드를 부여하고 있음

[보건의료자원 관리 현황('18. 6월말 기준)]

(단위: 개소, 명, 개, 대)

요양기관	의료인력	의료시설		의료장비
		병실	병상	
92,431	750,463	204,355	915,966	862,307

1-2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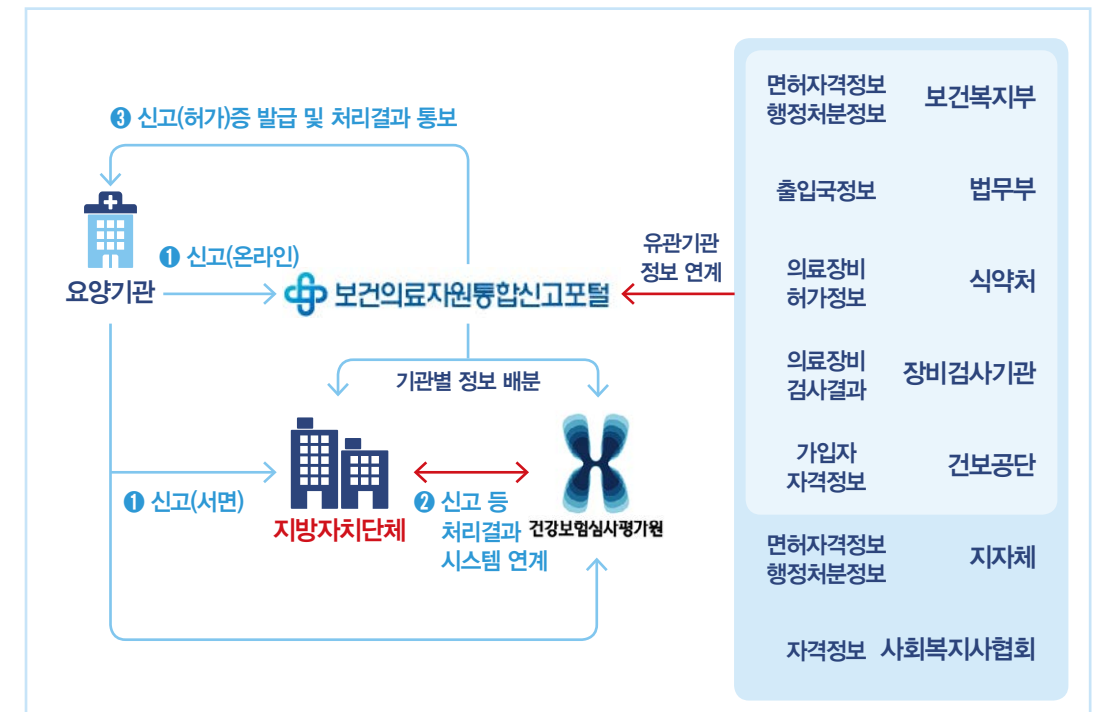
보건의료
자원 신고
일원화
시행 배경

- 보건의료자원 신고·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료법 등)와 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법령별 신고기준 차이에 따른 자원관리 불일치, 중복신고로 인한 민원 불편과 행정력 낭비 해소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가 시행됨
-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설치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서울행정시스템과 의료자원 신고(허가) 등 처리정보 연계로 신고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제도 시행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보험재정누수 사전 방지를 위해 기존 공문방식에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과 유관기관 정보를 연계(14종)하여 의료자원 현황관리 업무에 활용(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업무 프로세스]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일원화(9개)

- 지자체의 장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의료자원 신고(허가) 등의 처리결과를 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에도 의료자원 현황신고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사용중지양도폐기 등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시설등록사항 등 변경통보/ 양도 등 통보, 의약분업 예외지역 요양기관 신고

심사평가원 신고로 일원화(2개)

- 심사평가원은 의료자원 신고 처리결과를 새울행정시스템에 통보하고, 지자체의 장에게도 의료자원 현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

의원급 의료기관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신고

※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신청서는 변경허가가 아닌 변경신청서만을 제출한 것으로 함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3개)

- 지자체의 장은 현황신고 등 처리결과를 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은 그 처리결과 통보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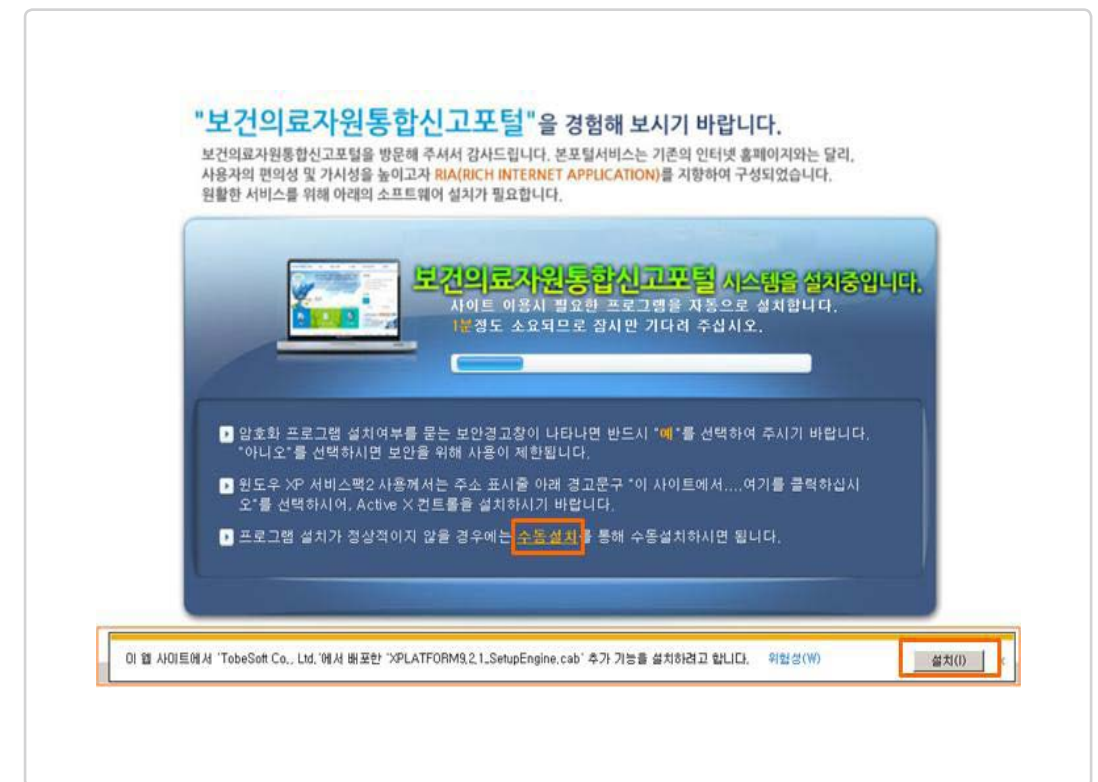
※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의 항목신고(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급여비용 수령 금융기관 등)를 심사평가원에 완료해야 요양기관기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시스템

2-1 통합신고포털 시스템 화면 구성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설치

- ① 인터넷 주소창에 www.hurb.or.kr을 입력하거나 검색포털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검색하여 통합신고포털 시스템 설치 페이지로 이동
- ② 시스템 설치를 위해 암호화 프로그램 설치여부를 묻는 보안경고창이 나타나면 '예' 또는 '설치'를 선택
 - 프로그램 설치가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수동설치'를 클릭하여 수동설치



- ③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사용하기 위한 필수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
- 프로그램의 설치 유무 확인이 가능하며, 미 설치 프로그램은 직접 선택하여 설치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합설치 합니다

■ 프로그램 설치 내역

프로그램 명	기능	설치상태
설치 프로그램	신고포털 솔루션 관련 설치 프로그램 목록(다운로드 후 실행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UI 솔루션(XPlatform)	UI 처리 프로그램	설치 필요 다운로드
XPlatform 실행 프로그램(XLauncher)	XPlatform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치됨
엑스퍼트(Reexpert)	양식지 확인 및 출력용 위한 프로그램	설치됨
파일 업로드 프로그램(DEXUploadNX)	파일 업로드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됨
구간 암호화(KSignCSAPI)	구간 암호화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됨
인증서 관리(KSignToolkit)	인증서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됨
위변조방지(SecureReader)	위변조방지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됨
2D 바코드(e-Page SAFER 2D barcode)	위조변조방지 2D바코드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됨
화면 캡처 방지(e-Page SAFER)	화면 캡처 방지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됨

프로그램 수동설치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포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

■ 통합신고포털 설치 프로그램 안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설치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터넷 상단 설치 요구사항의 승인을 하셔서 설치를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설치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심사평가원 헬프데스크(1644-2000)에서 상담받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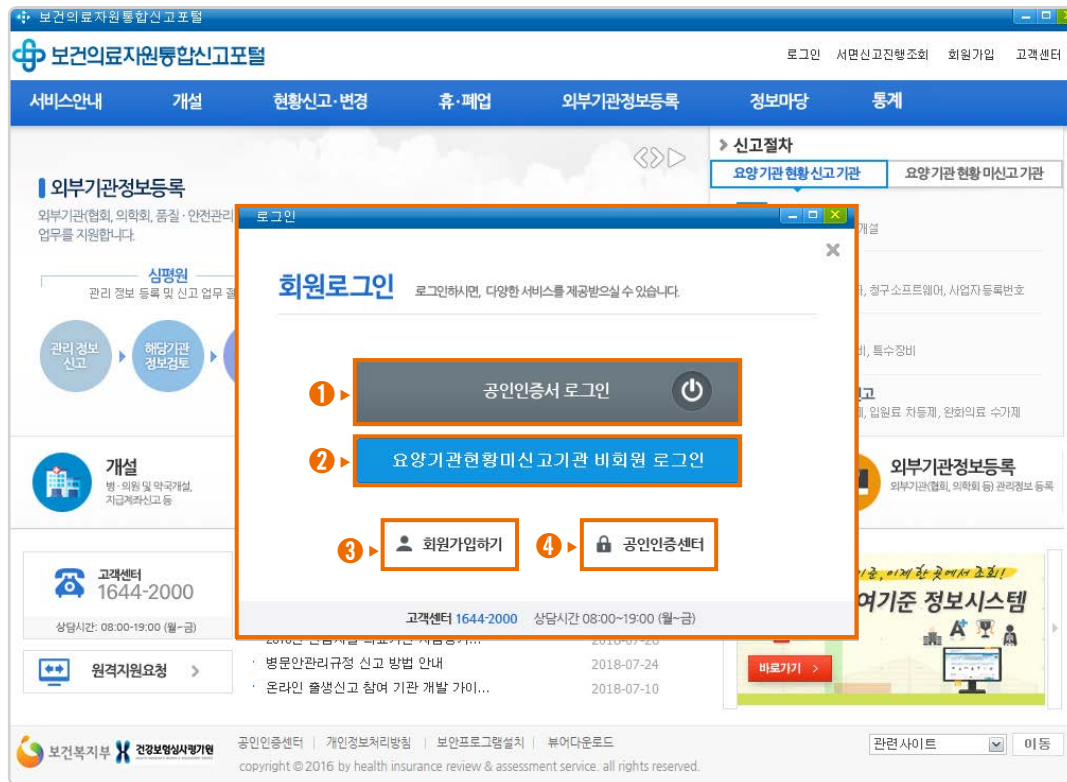
- ④ 필수 설치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후 '다음'을 클릭하여 통합신고포털 메인화면으로 이동

메인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main interface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portal. Numbered callouts highlight key features: 1. Login and user management links at the top right. 2. Main navigation menu including '서비스안내', '개설',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외부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and '통계'. 3. '신고절차' (Reporting Process) section with steps for opening, reporting, and receiving reports. 4. '개설' (Opening) section for reporting new facilities. 5.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with a phone number and online chat link. 6. 'What's NEW' section for recent notices. 7. Footer with copyright and contact information. 8. '관련사이트' (Related Sites) and '이동' (Move) links at the bottom right.

- 로그인 등 주요정보의 신속한 접근을 위한 Link제공
 - 로그인, 서면신고진행조회, 회원가입, 고객센터
- 신고포털 메뉴 바
 - 메인 메뉴를 표시하며, 주요 업무별로 구성하여 직관적인 사용자 접근이 가능
- 신고절차안내 제공
 - 요양기관 현황 신고기관,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기관
- 신고포털 주요업무의 흐름을 표시하였으며,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가능
- 고객센터 전화번호 안내
- 의료자원 신고 관련 새로운 공지사항 안내
- 의료자원 통합신고 관련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및 프로그램 설치 안내
- 의료자원 신고업무와 관련된 사이트 직접 이동

로그인



- ❶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시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
- ❷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 기관 비회원 로그인 시
 - 비회원 본인인증(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후 로그인
- ❸ 신규 회원가입시 '회원가입하기'를 클릭(심평원 포털 시스템 회원 가입으로 이동)
- ❹ 공인인증서 발급, 폐기, 이동, 복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센터'를 클릭 (공인인증서 관리 사이트로 이동)

뷰어 다운로드



- ❶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 사용하는 뷰어들을 제공
 - 한글뷰어, 엑셀뷰어, PDF뷰어 다운로드 제공

● 서비스 안내



- 의료장비 신고(변경)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및 일반장비의 현황신고 및 변경 절차 안내
- 관할 심사평가원 안내
 - 관할 심사평가원의 연락처 및 약도를 안내
- 기타제도안내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수가 차등제
 -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 입원환자 식대
- 시 · 도 위임사무안내
 - 지자체별, 종별, 설립구분별, 시군구 위임여부 및 위임적용/종료 일자

- 통합신고포털 홍보
 - 통합신고포털 소개 및 홍보(홍보 영상 및 포스터)
- 통합신고 안내
 - 신고일원화 이후의 변경된 절차 안내
- 신규 개설
 -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규개설 절차 안내
- 지급계좌 신고
 - 개설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기 위한 계좌번호 등록 절차 안내
- 휴업 및 폐업
 - 의료기관 및 약국의 휴업과 폐업 절차 안내
- 현황 변경
 - 의료기관의 시설/대표자/진방(특수장비)현황변경에 대한 절차 안내

● 서면신고 진행조회

❶ 신고인이 지자체에 서면신고로 접수한 민원접수번호를 입력하면 관련 신고자료의 처리상태 등 민원진행상황을 제공

- 민원명, 민원접수번호, 지역, 접수자, 신청자명, 신청일, 접수일, 처리예정일, 처리상태, 담당부서, 처리일수, 담당자명, 담당자연락처

2-2 자주하는 질문(FAQ)

연번	질 의	답 변
1	통합신고포털에서 증명서 발급이 안됩니다.	●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 진방 또는 특수의료장비증명서. ● 증명서 발급은 통합신고포털로 개설이나 변경 신고 시 온라인 발급여부 'Y' 선택하고, 지자체 새울시스템 발급유무 '유' 선택 ▶ '보건인허가증 출력정보 조정' 화면에서 발급구분 사유를 '신규발급', '변경발급', '분실재발급' 또는 '훼손재발급' 중 선택 ▶ 확인버튼 ▶ 미리보기 화면 확인 필요, 통합신고포털 ▶ 정보마당 ▶ 마이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함. ● 보안 등의 문제로 출력은 한번만 가능, 재출력은 지자체요청.
2	휴대폰 인증 후 2차 인증 시 해당기관이 없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 인증하려는 기관 기호가 이미 확인이 되었는지 확인 필요. ● 휴대폰 인증 개설자의 휴대폰 명의가 심평원에 등록된 이름과 다른지 확인 필요. ※ 개명이나 외국인일 경우 심평원에 등록된 이름을 기관 담당자가 일치 하도록 변경해야함)
3	신고포털 외부기관정보등록 메뉴 이용 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경고창이 뜨면서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대신 외부기관사용 ID/PW로 www.hira.or.kr 사이트를 통해 로그인 후 신고포털에 접속. (로그인 세션정보 연동)
4	개설자가 개명한 후 개설하는 경우 비회원 로그인 시 인증이 안됩니다.	● 보건복지부에 이름이 변경되었다라도 심평원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을 변경해야 인증 가능. ● 개명한 이름을 심평원 담당 지원에 전화 후 변경 필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매뉴얼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II

요양기관 일반현황 신고

1. 요양기관 기본 현황 신고

HIRA

1. 요양기관 기본 현황 신고

1-1 개설

진행 절차

- 1)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 2) '개설' ▶ '의료기관 개설'(또는 '약국 개설') 클릭
- 3) 대표자 본인인증 후 우측 하단 '의료기관 개설'(또는 '약국개설') 버튼 클릭
 - 탭 순서대로 입력 진행
 - 진행 중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 사전검토 신청완료 후 민원 접수처리가 되면,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완료 시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명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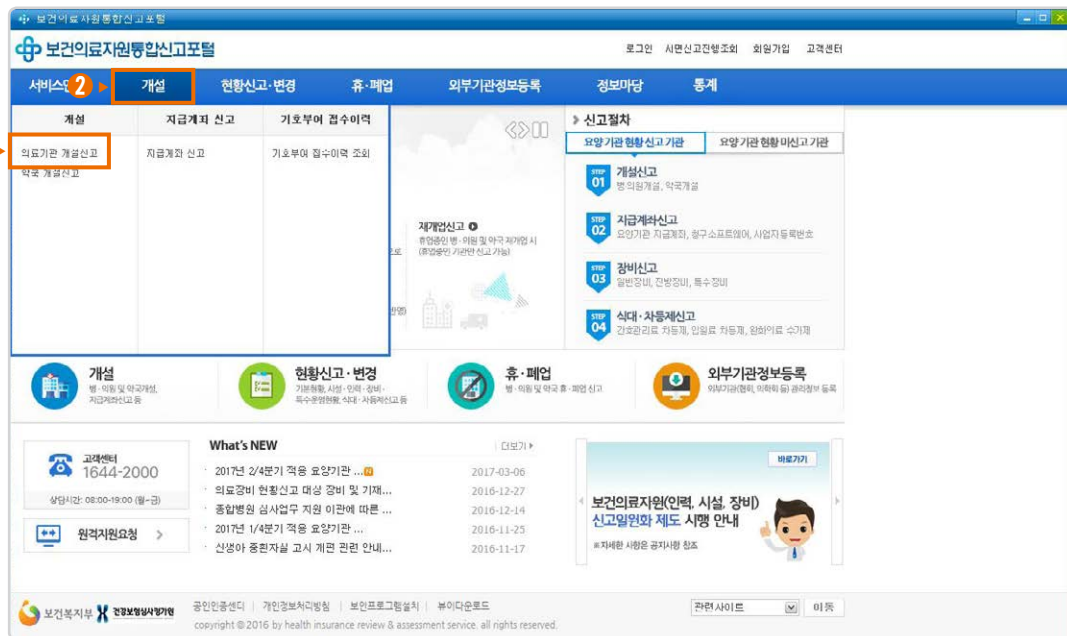
제출 서류

구 분	관련규정	제출서류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려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제출 5. 「의료법」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자가점검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728호('17.6.29.) ※ 다운로드 위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 필요 시 의료기관의 진료시설(입원실, 검사실 등) 및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사진 첨부를 제출하며, 이 외에 관할 행정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법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종합병원만 해당)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료법인인 경우만 해당)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 6. 「의료법」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자가점검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728호('17.6.29.) ※ 다운로드 위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 필요 시 의료기관의 진료시설(입원실, 검사실 등) 및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사진 첨부를 제출하며, 이 외에 관할 행정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약국	「약사법」 제20조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의료기관 개설)



1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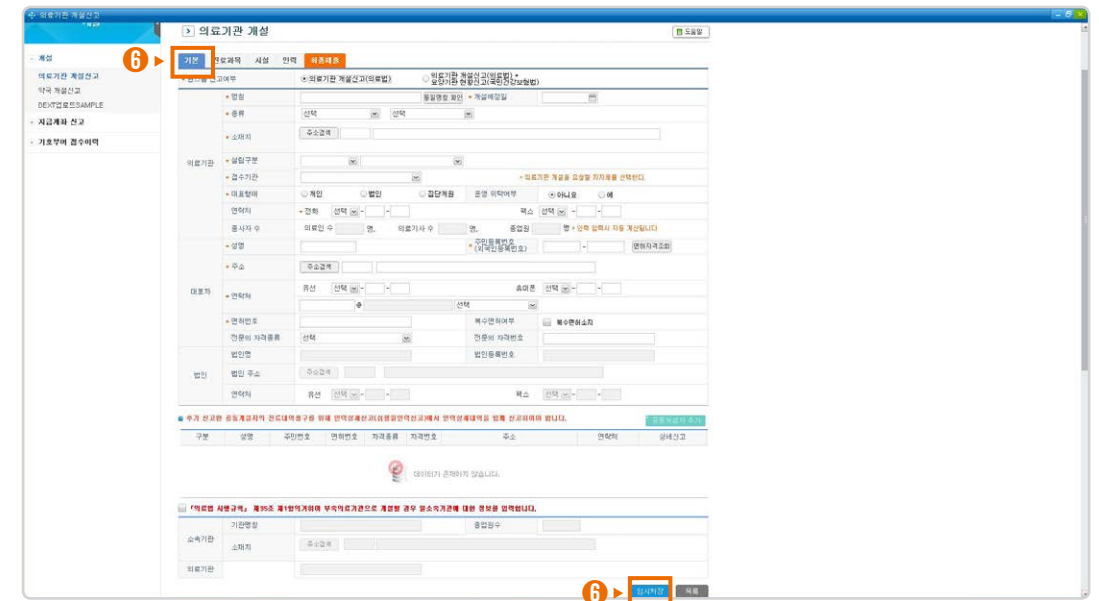
2 '개설' 선택

3 '의료기관 개설'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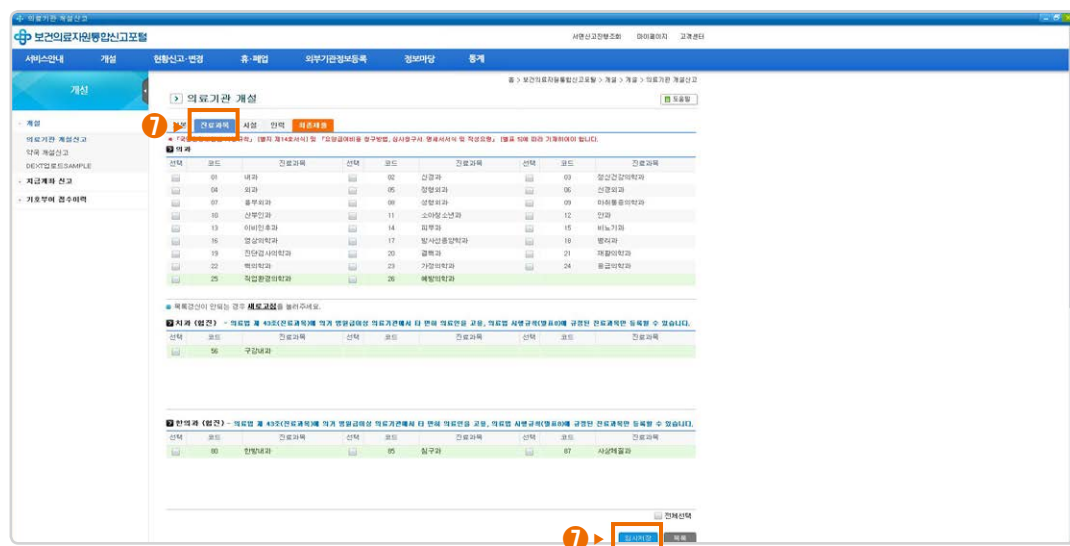


4 대표자 본인인증

5 우측 하단 '의료기관 개설'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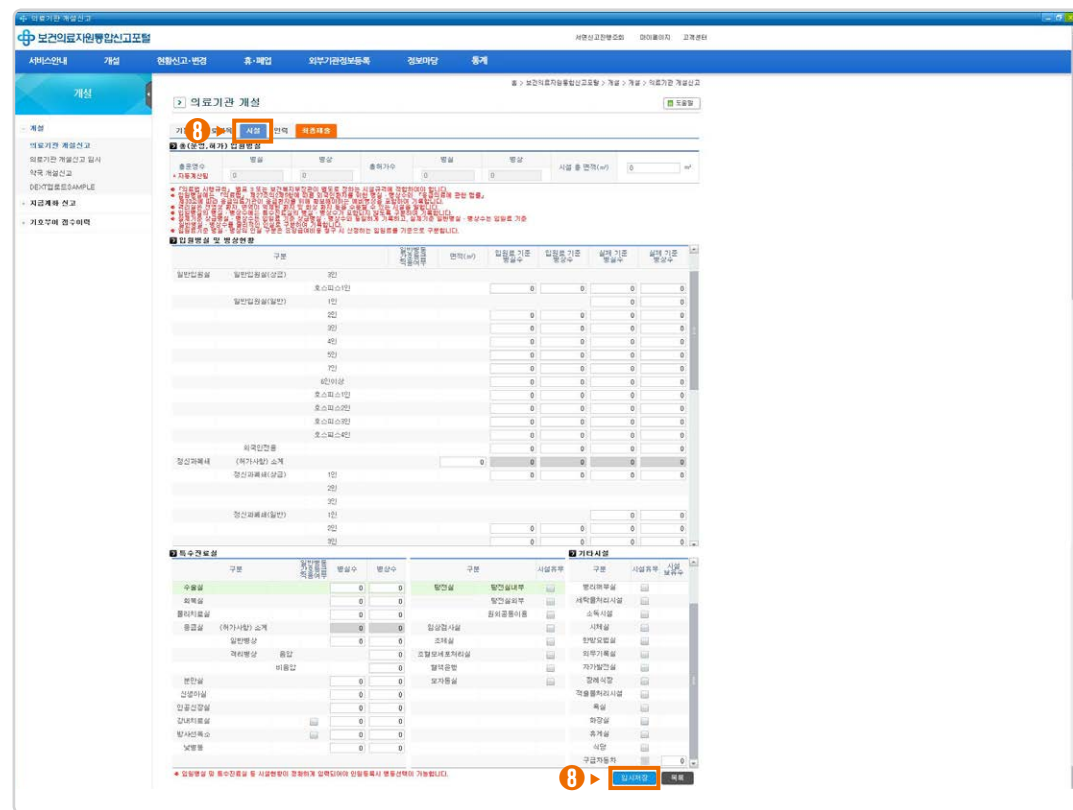


6 기본사항을 순서대로 입력 후 임시저장



⑦ 해당 진료과목에 체크 후 임시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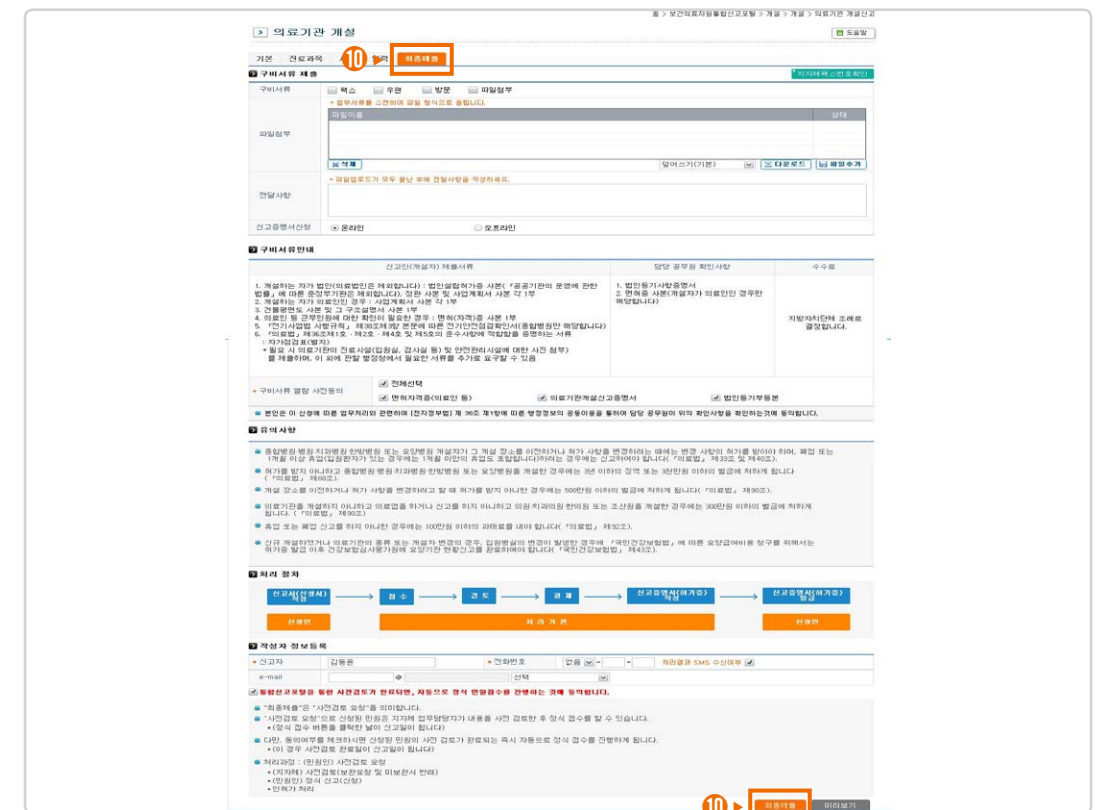
(진료과목의 경우 대표자 면허종별,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위 화면의 목록과 다를 수 있음)



8 해당 시설 정보 입력 후 임시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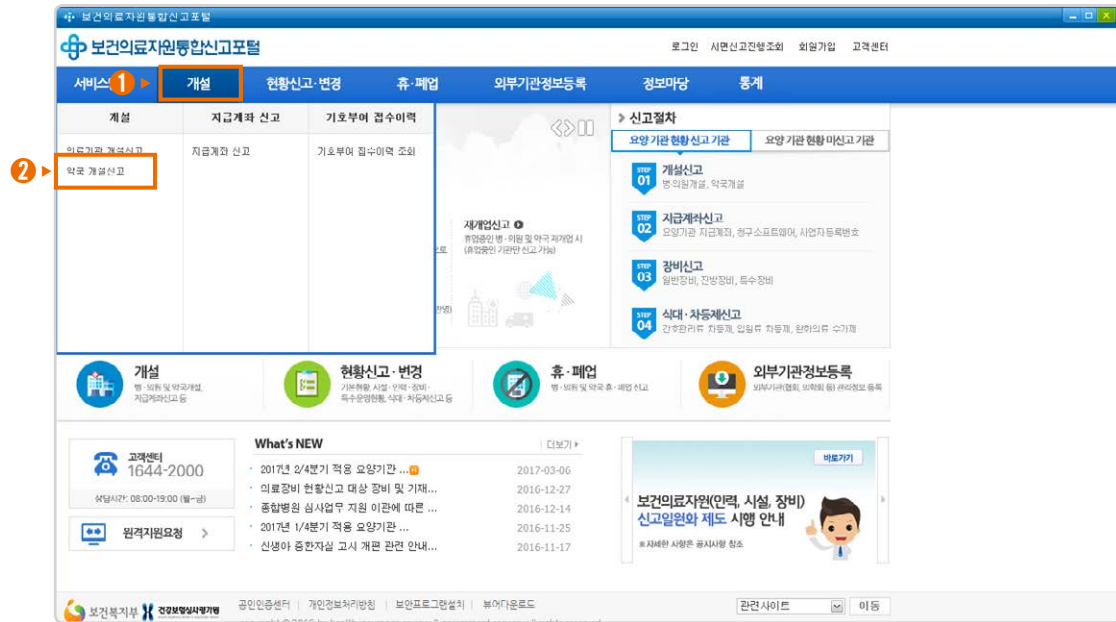


9 인력상세 신고 및 인력 정보 입력 완료 후 임시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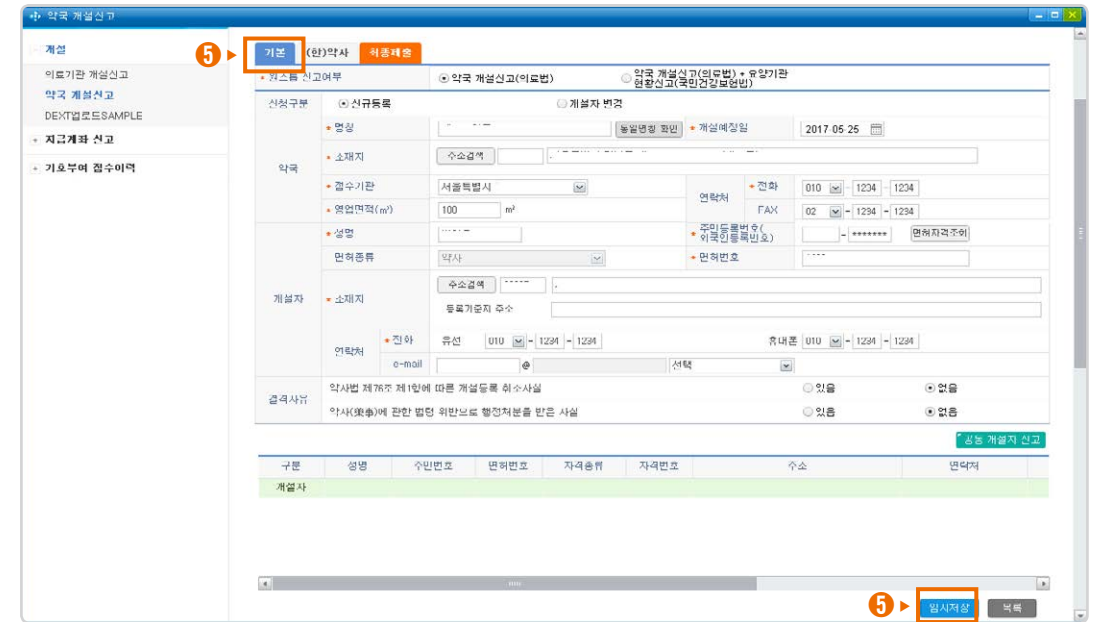


10 구비서류 확인 · 첨부 및 최종제출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약국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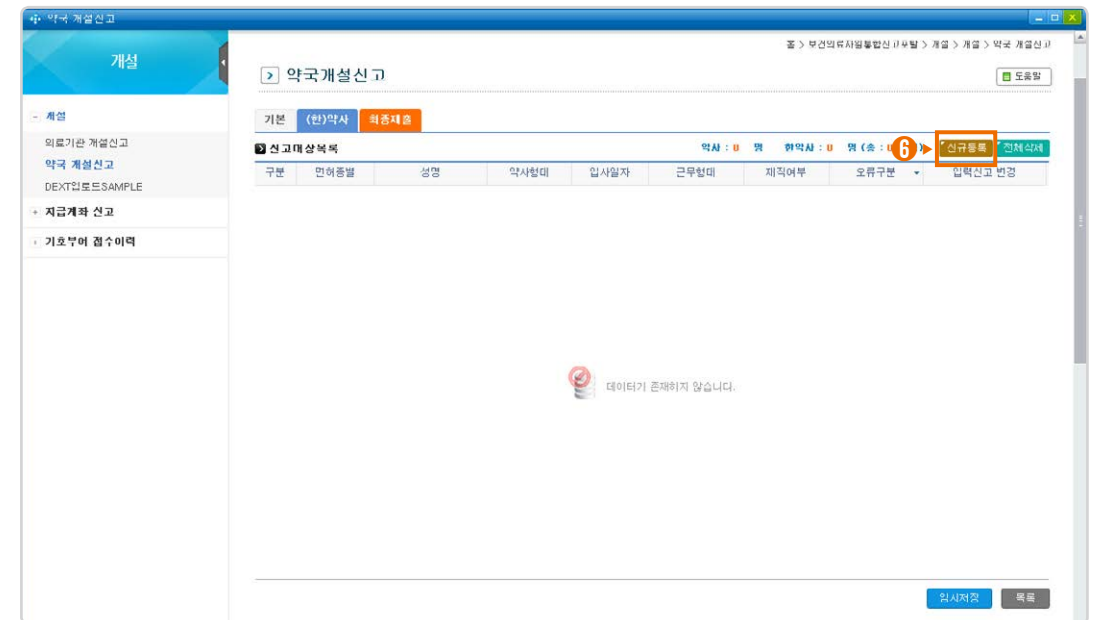
- ① '개설' 선택
- ② '약국 개설신고' 클릭



- ⑤ 기초사항을 순서대로 입력 후 입시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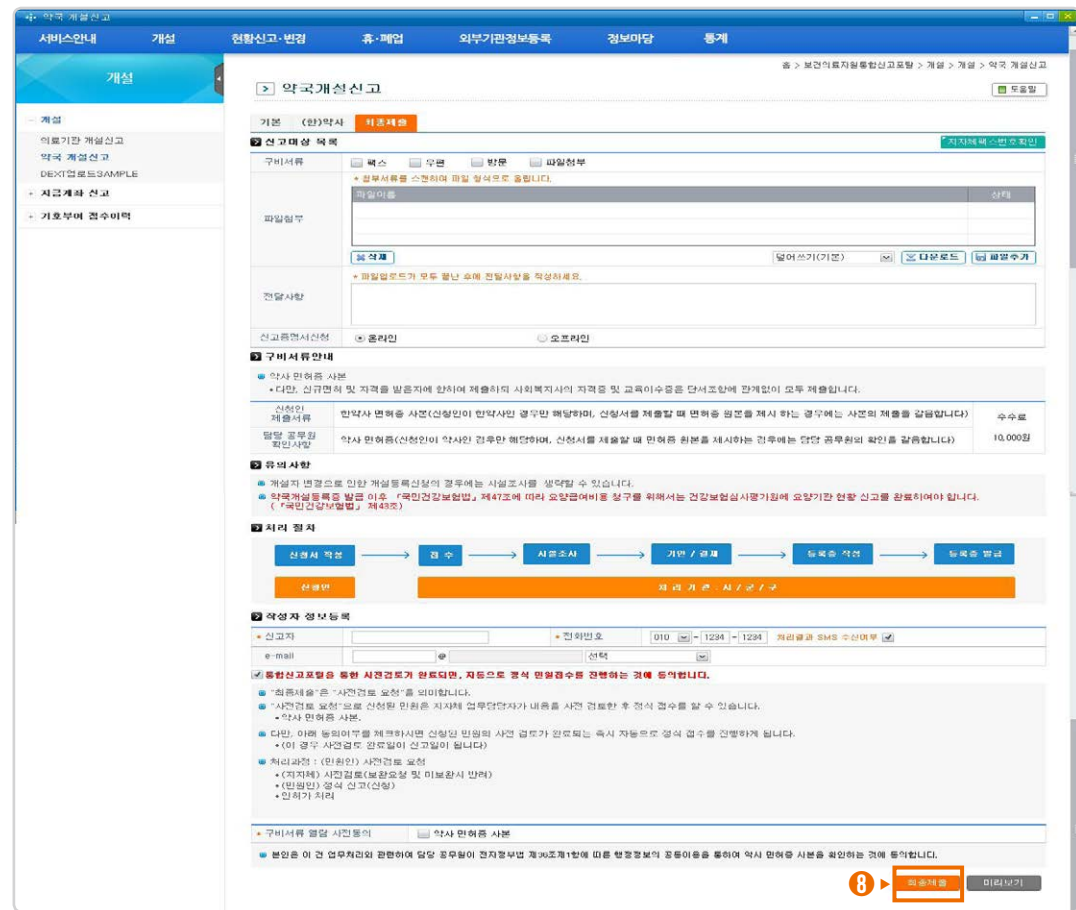
- ③ 대표자 본인인증
- ④ 우측 하단의 약국개설 클릭



- ⑥ (한)약사정보 입력을 위해 신규등록 클릭



7 아래 안내사항 참고하여 탭순서 대로 작성 후 임시저장



8 구비서류 확인 · 첨부 및 최종제출
※ 자가점검표는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첨부

1-2 지급계좌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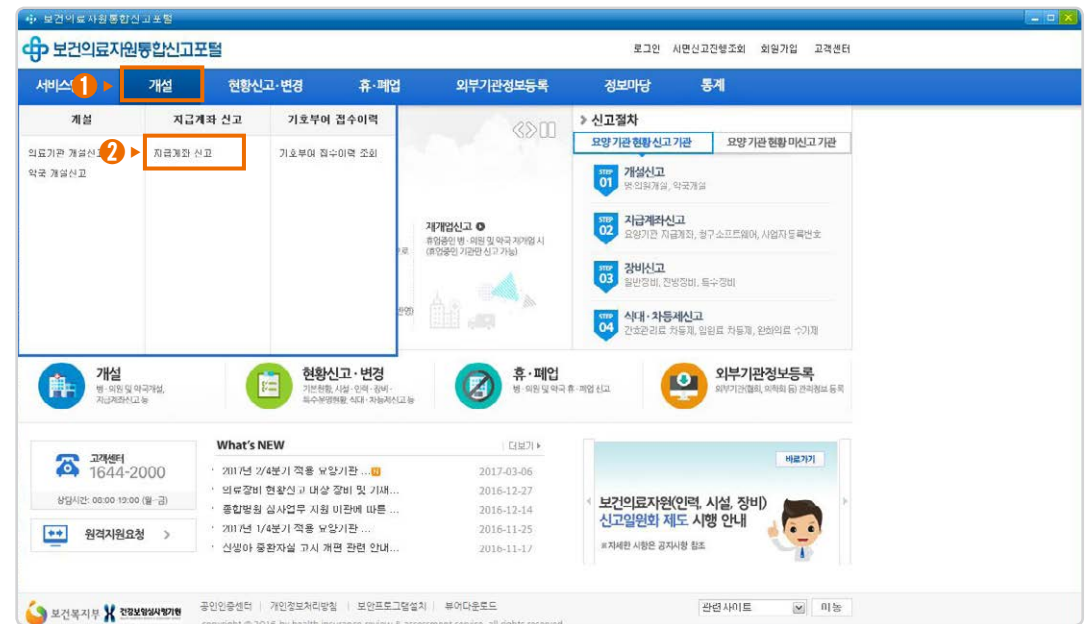
신고요건

- 관할 지자체에서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자료가 심사평가원으로 전송되며, 검토 후
요양기관 기호 가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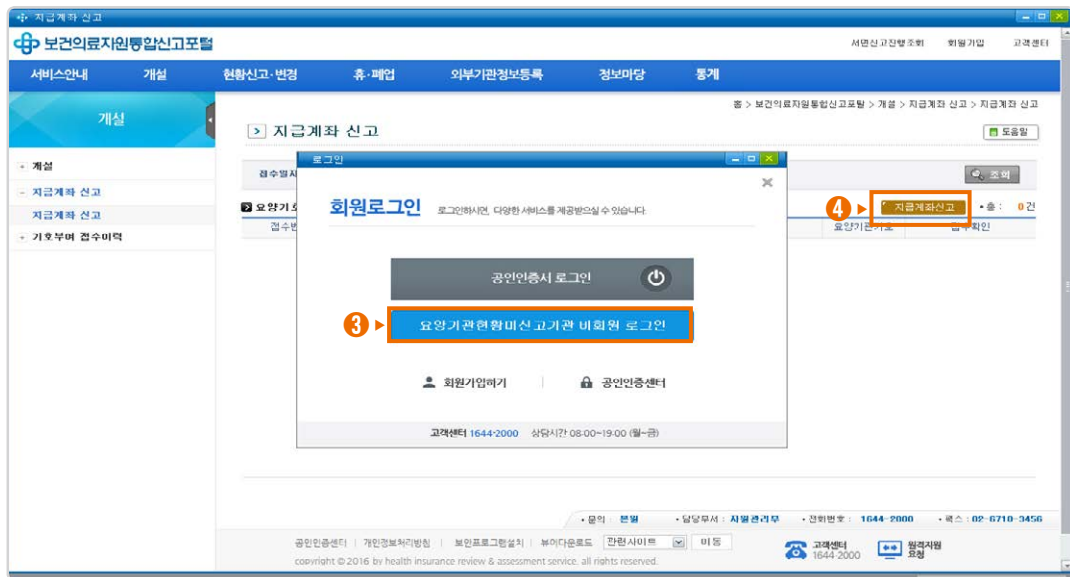
진행절차

- 1) '개설' ▶ '지급계좌 신고'클릭
- 2) 대표자 본인인증 후 화면 중간의 우측 '지급계좌 신고'클릭
 - 탭 순서대로 입력 진행
 - 진행 중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 최종 제출 후 접수 처리가 되면, 심사평가원에서 검토 후 요양기관 기호 확정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지급계좌 신고)



- 1 '개설' 선택
- 2 '지급계좌 신고' 클릭



3 대표자 본인인증(비회원 로그인)

※ 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안내받은 가요양기호 입력 + 대표자 공인인증서 또는 대표자명의 휴대폰으로 로그인(법인기관의 경우 법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4 '지급계좌 신고'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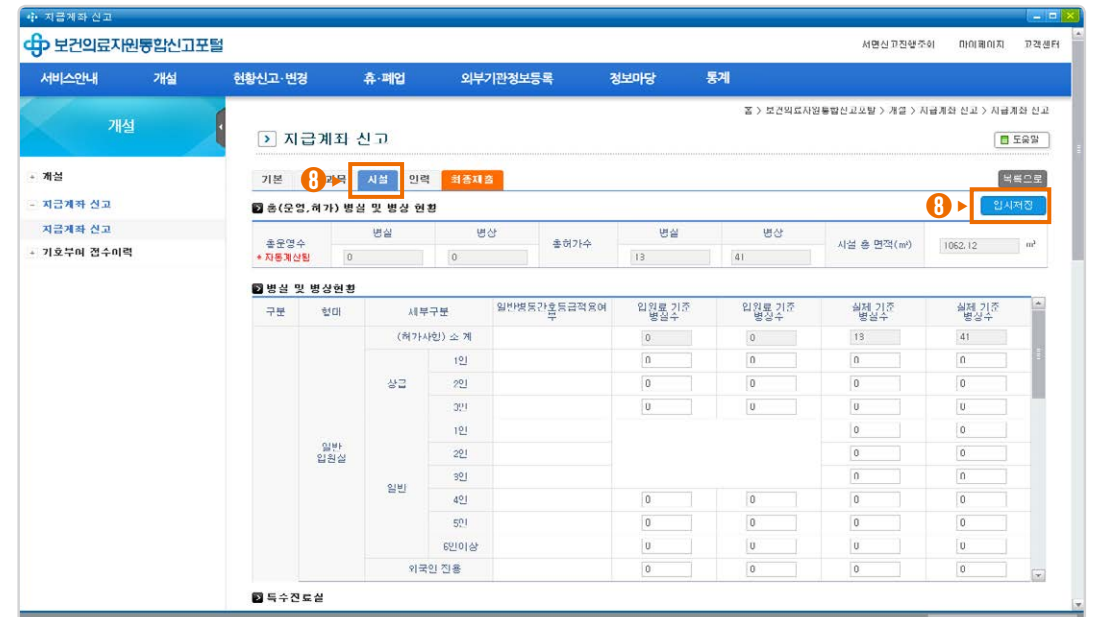


5 기본사항 입력 및 특수운영현황 선택 후 임시저장

6 양도 · 양수기관의 경우 임시저장 후 '인력승계팝업'과 '장비승계팝업' 클릭하여 승계할 사항을 선택 후 다음 단계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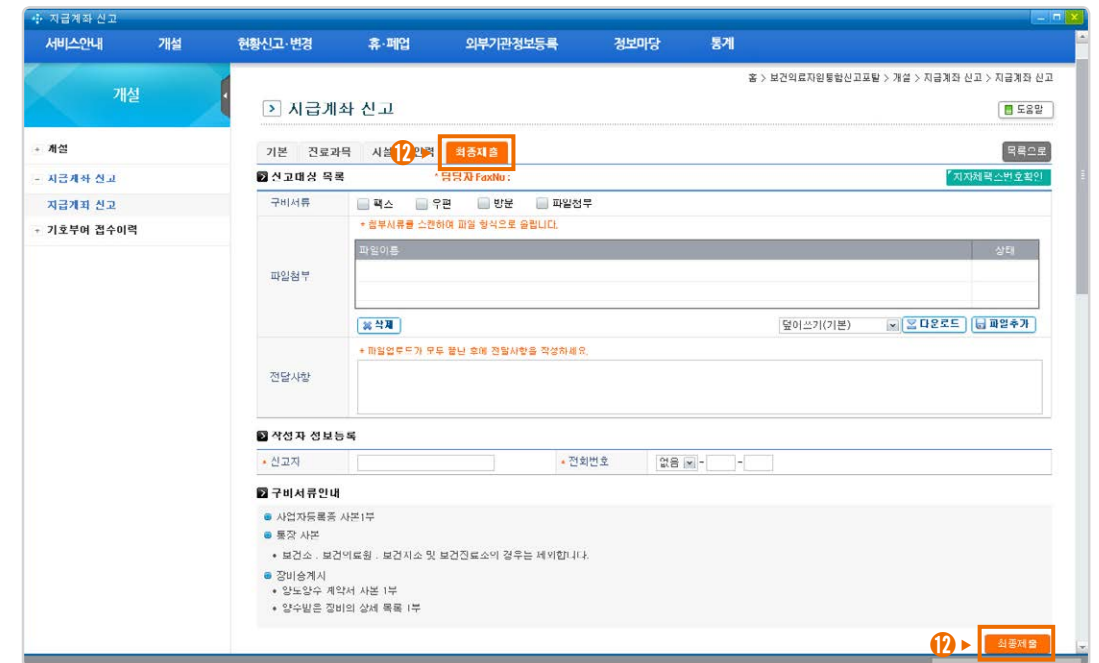
7 해당하는 진료과목 체크 후 다음 단계로 진행



8 해당하는 시설정보 입력 후 임시저장



9 '인력상세 신고' 클릭



12 구비서류 첨부, 작성자 정보 입력 후 최종 제출

※ 하단의 '구비서류안내' 부분 참고



10 각 탭별 해당 인력 입력 후 닫기

11 개설신고 시 입력한 인력정보를 불러오기 하려면 '원스톱 신고내역 불러오기' 클릭

1-3 변경

의료기관(기본현황, 대표자, 진료과목, 시설) 변경신고 절차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 '관할 지자체 신고(허가)' ▶ '의료기관(기본, 대표자, 진료과목, 시설) 변경신고'클릭
- 2)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 항목 체크 후 변경내용 입력, 저장 후 제출
 - 관할 지자체 신고(허가)이므로, 지자체에서 검토 후 반영하면 심사평가원으로 접수 및 반영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의료기관 변경 신고)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 2) '관할 지자체 신고(허가)' 선택
- 3) '의료기관(기본, 대표자, 진료과목, 시설) 변경신고' 클릭

- 4)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 항목 체크 후 변경사항 입력
- 5) 저장 후 구비서류 확인·첨부 및 최종 제출
 - ※ 자가점검표는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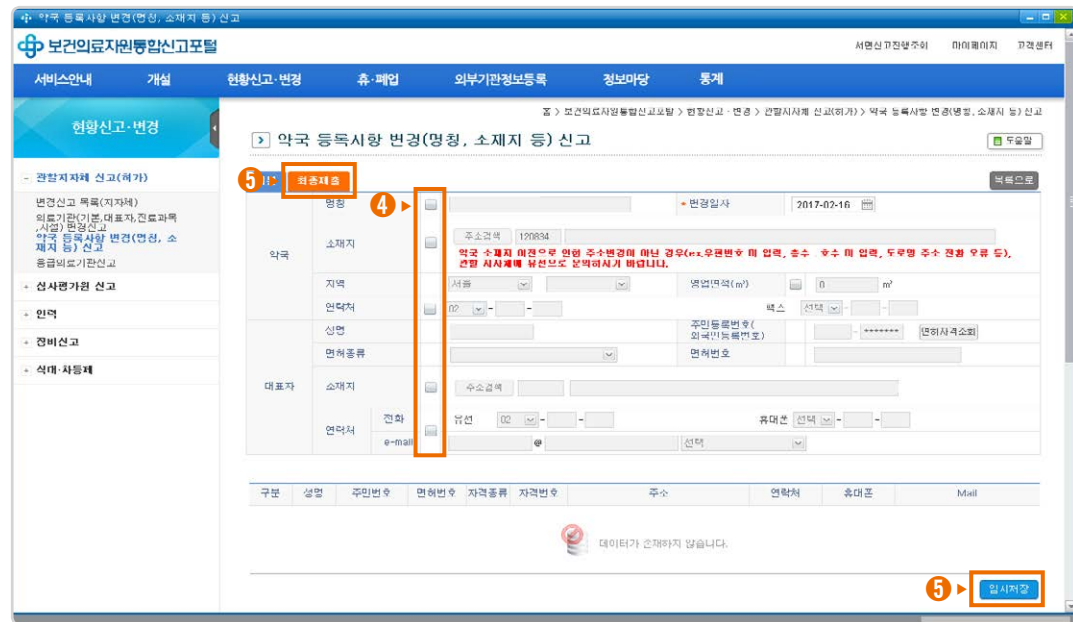
약국 등록사항 변경(명칭, 소재지 등) 신고 절차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 '관할 지자체 신고(허가)' ▶ '약국 등록사항 변경(명칭, 소재지 등) 신고'클릭
- 2)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 항목 체크 후 변경사항 입력, 저장 후 제출
 - 관할 지자체 신고(허가)이므로, 지자체에서 검토 후 반영하면 심사평가원으로 접수 및 반영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고)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 · 변경' 선택
- 2 '관할 지자체 신고(허가)' 선택
- 3 '약국 등록사항 변경(명칭, 소재지 등) 신고' 클릭



- 4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 항목 체크 후 변경사항 입력
- 5 저장 후 최종 제출

주 · 공동개설자 변경 신고 절차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 · 변경' ▶ '심사평가원 신고' ▶ '주·공동개설자 변경신고' 클릭
- 2 현 대표자 체크박스 체크 하면 주부 개설자 변경 버튼이 활성화 되고 버튼을 누르면 안내 메시지 팝업이 호출됨
- 3 “네”를 클릭하면 주개설자 및 공동개설자 목록이 뜨며 변경할 주개설자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여 선택함
- 4 임시저장버튼을 누르면 변경된 주개설자가 대표자에 저장되며, 하단의 개설자 목록도 변경되며, 확인 후 최종 제출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주 · 공동개설자 변경신고)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 · 변경' 선택
- 2 '심사평가원 신고' 선택
- 3 '주·공동개설자 변경신고' 클릭

④ 현 대표자 체크박스 체크

⑤ 주·부 개설자 변경 버튼이 활성화 되며 버튼을 누르면 안내메시지 팝업이 호출됨

⑥ “네”를 클릭하면 주개설자 및 공동개설자 목록이 뜨며 변경할 주개설자를 마우스로 더블클릭하여 선택함

⑦ 임시저장버튼을 누르면 변경된 주개설자가 대표자에 저장되며, 하단의 개설자 목록도 변경됨

⑧ 입력사항 확인 후 구비서류(공동계약서) 확인·첨부 및 최종 제출

사업자번호 변경 신고 절차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 ‘심사평가원 신고’ ▶ ‘요양기관 사업자번호 등 변경신고’ 클릭
- 2)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및 저장 후 최종제출(사업자 등록증 첨부)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사업자번호 변경 신고)

1-4 휴업 및 폐업

휴업신고절차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휴 · 폐업’ ▶ ‘휴업신고(재개업, 휴업변경)’ 클릭
- 2) 휴업신고 클릭
- 3) 내용 작성 후 저장, 최종제출
 - 휴업신고 시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심사평가원으로만 신고가 되며, 1개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1개월 미만 휴업도 포함*)인 경우 관할지자체와 심사평가원으로 모두 신고가 됨
 - ‘입원환자 존재 유무’를 반드시 입력(Y 또는 N)해야 신고를 완료할 수 있음

제출서류

- 1) 의료업의 휴업 결의서(법인만 해당)
- 2) 「의료법 시행령」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① (세탁물 처리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별지 제5호서식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또는 별지 제6호서식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 * 폐업 또는 휴업일이 속한 달의 대장을 제출하며 처리내역이 기재된 면에, “잔여 세탁물의 적절한 처리를 완료하였음”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
 - ② (진료기록부 보관에 관한 사항)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 ③ (전원조치 등에 관한 사항) 환자 전원조치 완료사항(입원환자 중 전원환자 및 퇴원환자 현황 등) 및 휴폐업 안내문 게시 관련 사진



-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 · 변경’ 선택
- ② ‘심사평가원 신고’ 선택
- ③ ‘요양기관 사업자번호 등 변경신고’ 클릭



- ④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 ⑤ 저장 후 최종 제출(사업자 등록증 첨부)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휴업 신고)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휴·폐업' 선택
- 2) '휴업신고(재개업, 휴업변경)'클릭 후 **휴업신고** 클릭



- 3) 내용 작성 후 저장
- 4) 구비서류(세탁물 처리대장,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환자 전원 조치 및 휴업 안내 게시 사진) 확인 · 첨부 및 최종 제출

폐업신고절차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휴·폐업' ▶ '폐업신고' 클릭
- 2) 폐업신고 클릭
- 3) 내용 작성 후 저장, 최종 제출 (관할 지역 보건소로 신고됨)

제출서류

- 1) 의료업의 폐업 결의서(법인만 해당)
- 2) 「의료법 시행령」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① (세탁물 처리에 관한 사항)「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별지 제5호서식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또는 별지 제6호서식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 * 폐업 또는 휴업일이 속한 달의 대장을 제출하며 처리내역이 기재된 면에, "잔여 세탁물의 적절한 처리를 완료하였음"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
 - ② (진료기록부 보관에 관한 사항)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 ③ (전원조치 등에 관한 사항) 환자 전원조치 완료사항(입원환자 중 전원환자 및 퇴원환자 현황 등) 및 휴폐업 안내문 게시 관련 사진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폐업 신고)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휴·폐업' 선택
- 2) '폐업신고' 클릭 후 **폐업신고** 클릭

1-5 자주하는 질문(FAQ)

연번	질 의	답 변
1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를 공동개설자의 계좌로 변경가능한가요?	변경 불가능.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필증 또는 약국개설등록증상에 기재된 개설자 중 1순위로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유권해석: 보건복지부 급여65720-1552호 (2002.10.23.)
2	보건소와 통합신고포털로 중복 개설신고로 인해 개설신고료 (수수료포함) 반환요청 시 포털에서 개설신고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 개설신고 시 했던 로그인 방식으로(비회원 로그인) 로그인 후 개설신고 취소 버튼 클릭. (기관기호로 로그인 시 개설 신고건보이지 않음)
3	요양기관 재부여 기관 지급계좌 신고 시 장비승계팝업을 선택해도 장비 목록 조회가 안됩니다.	● 장비승계팝업 상단에 임시저장 버튼 선택했는지 확인. (임시저장을 해야 승계대상 장비목록 확인 가능) ● 해당 장비가 폐업일 이전 날짜로 종료되었는지 확인. (폐업일 ▶ 장비적용종료일인 경우 승계 미필요)



- 3 내용 작성 후 저장
- 4 구비서류(세탁물 처리대장,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환자 전원 조치 및 휴업 안내 게시 사진)
확인 · 첨부 및 최종 제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매뉴얼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III

인력 · 시설 · 장비 신고

1. 요양기관 인력 현황 신고
2. 요양기관 시설 현황 신고
3. 요양기관 장비 현황 신고

HIRA

1. 요양기관 인력 현황 신고

1-1 인력 현황 신고

알아두기

1) '16년 1월 1일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의 시행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대진의신고 및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은 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 됨(심사평가원에 신고 시, 관할 지자체에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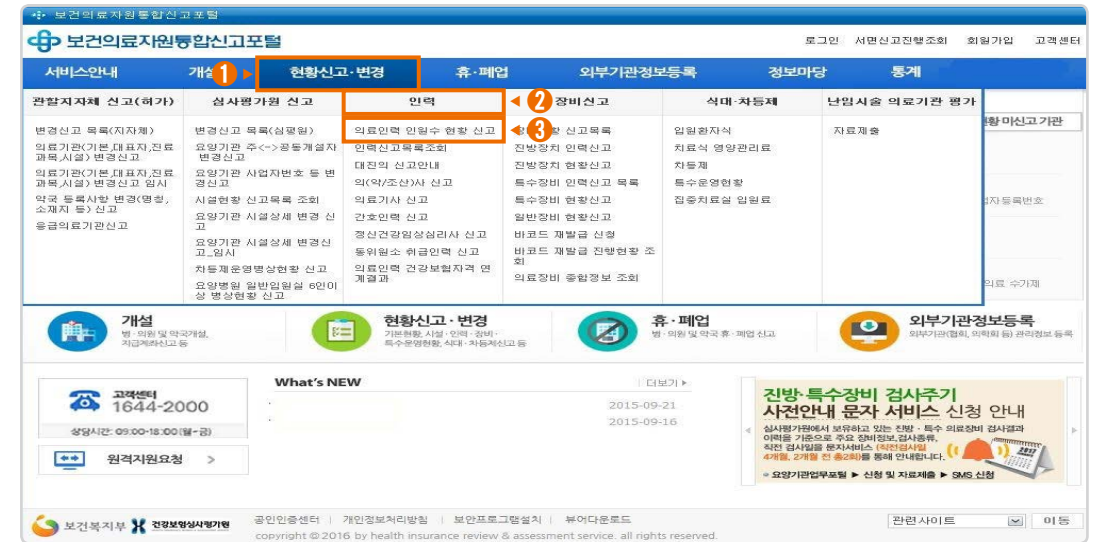
2) 면허종별 신고형태

상세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인원수 현황신고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취급감독자,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안경사, 기타종사자
상세신고 및 인원수 현황 동시 신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동위원소취급자(일반, 특수), 영양사, 조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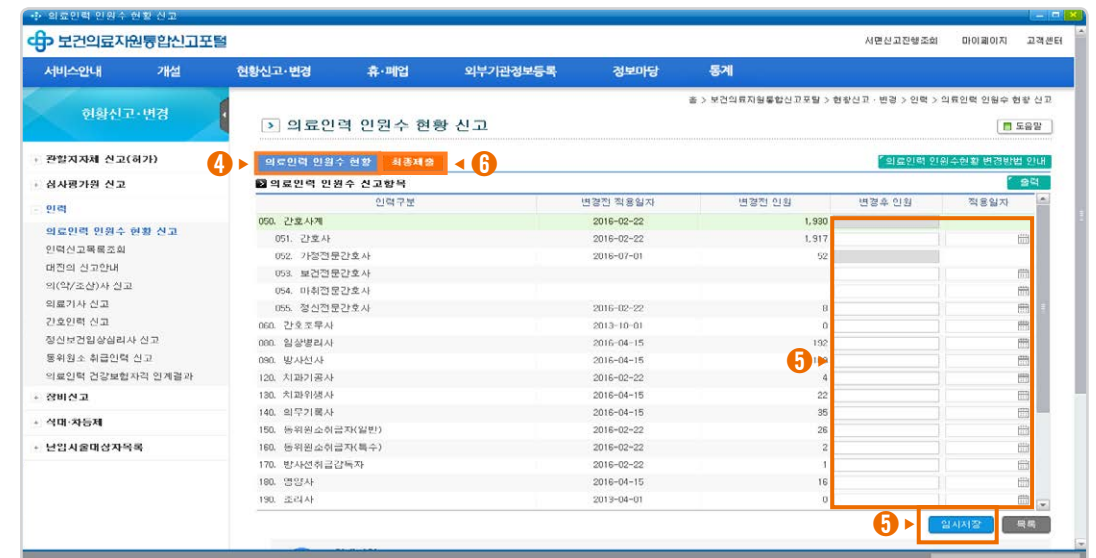
진행 절차

- 로그인 후 '현황신고 · 변경'에서 신고하는 항목 클릭
※ 신고 항목: 의료인력 인원수, 의(약/조산)사, 의료기사, 간호인력,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동위원소 취급인력
- 신규 건은 '신규입사', 기존인력 변경 건은 '변경', 퇴사는 '퇴사신청' 버튼 클릭
- 탭 별로 정보 입력 후 '임시저장'버튼 클릭
- 최종제출 탭으로 이동하여 작성자 정보 등록 후 하단의 '최종제출' 버튼 클릭
※ 의 · 약사 기본정보 입력 시, 면허조화가 되지 않을 경우 심사평가원 복지부 DB점검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확인을 통한 정보 정정 후 신고 진행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의료인력 인원수 현황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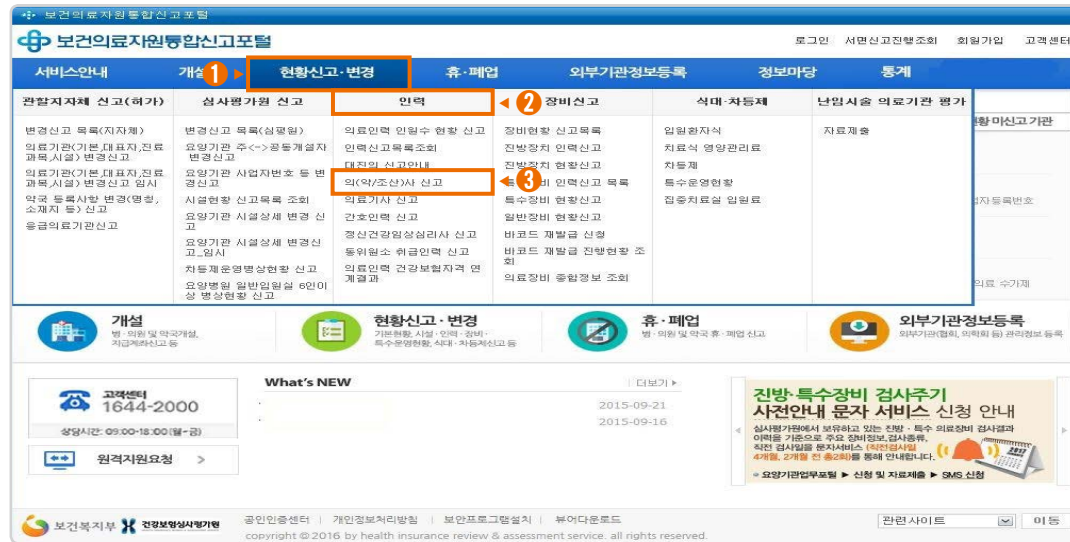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 · 변경' 선택
- '인력' 선택
- '의료인력 인원수 현황 신고'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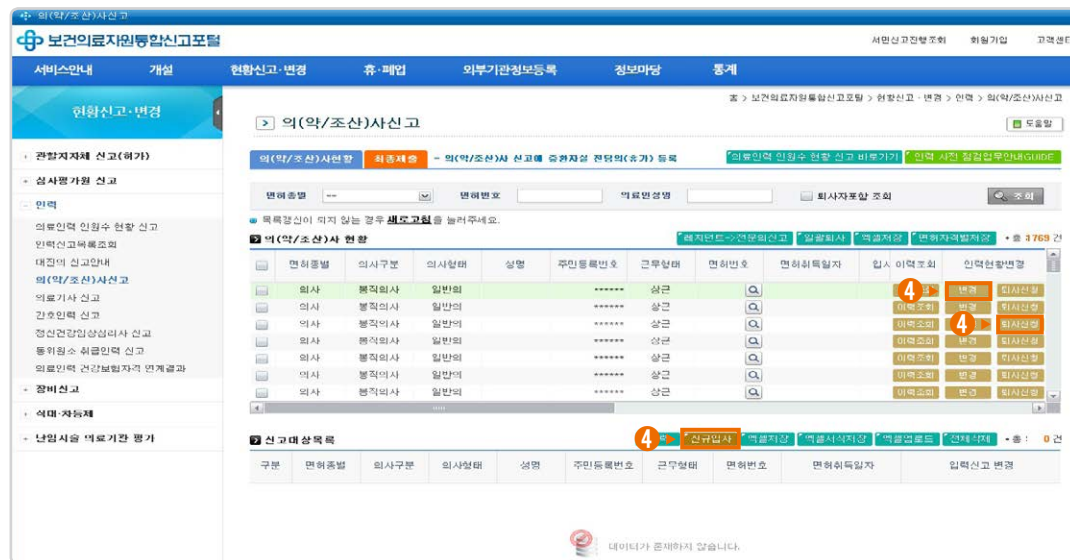


- '의료인력 인원수 현황' 탭 클릭(의 · 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는 인원수 별도 입력하지 않음)
- '변경 후 인원' 과 '직용일자' 입력 후 임시저장
- 최종제출 탭으로 이동하여 작성자 정보 등록 후 '최종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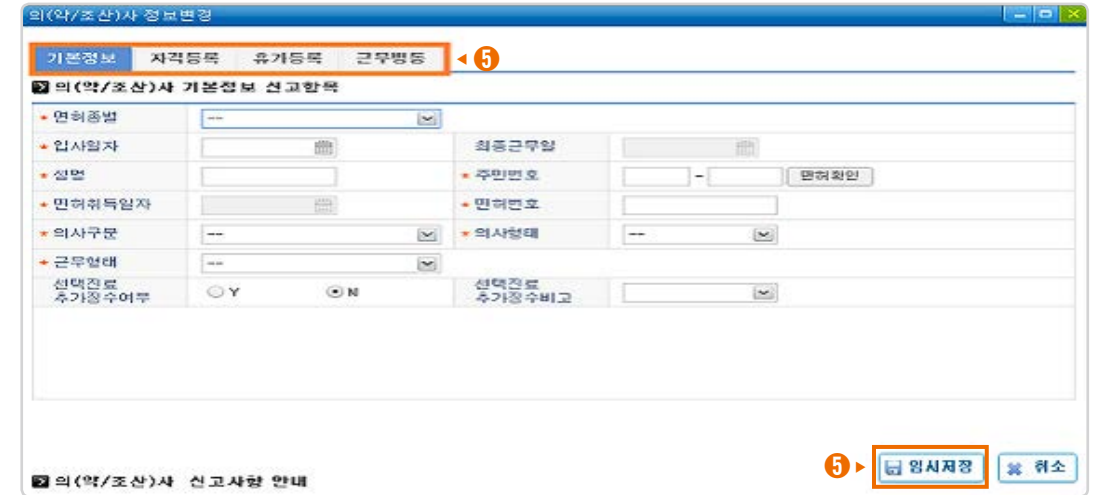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의(약/조산)사 신고)



-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 · 변경' 선택
- ② '인력' 선택
- ③ '의(약/조산)사' 신고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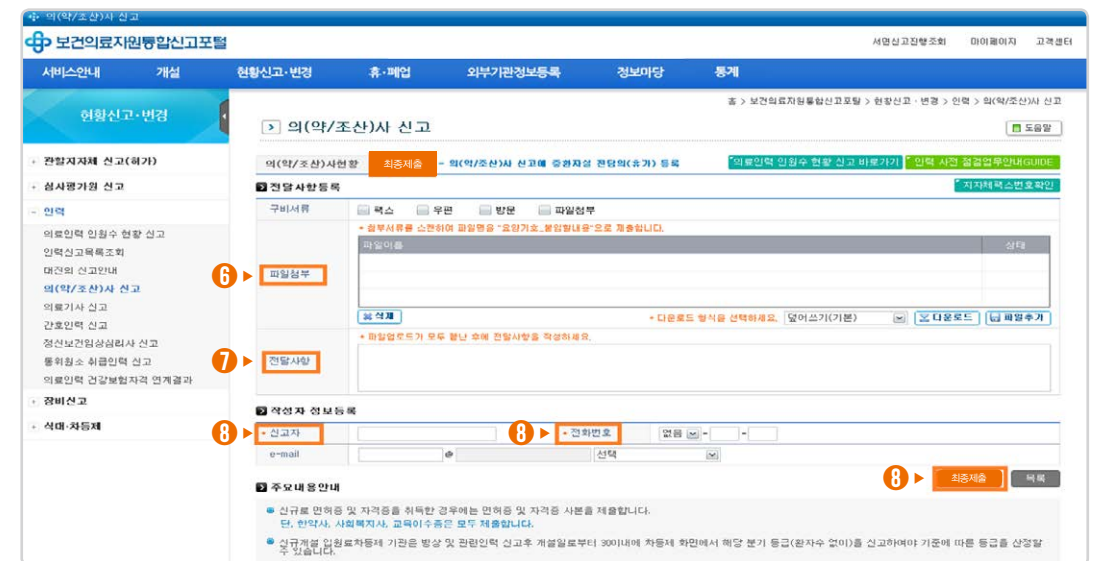


- ④ 신규 건은 '신규입사', 기존 건 변경은 '변경', 퇴사는 '퇴사신청'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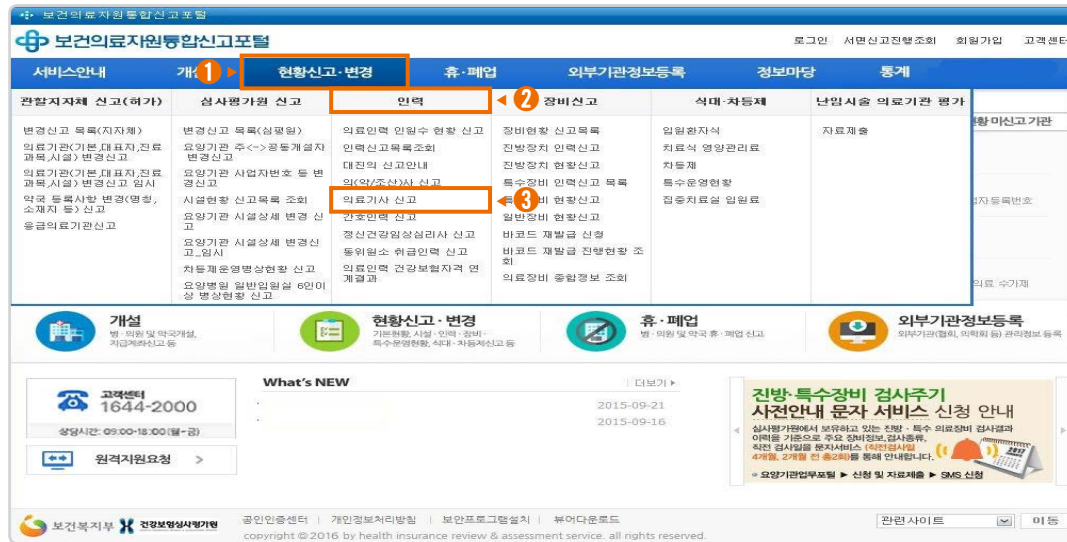
- ⑤ '기본정보', '자격등록', '휴가등록', '근무병동' 탭 별로 신고사항 입력 후 임시저장

- ㉠ 면허종별(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입사일자, 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 **면허확인** 필수
- ㉡ 의사구분(공동)개설자, 봉직의사 등),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기타, 대진, 전속여부)입력 후, **임시저장**
- ㉢ 휴가 등 개설자의 부재 시, 대진의 신고 필수
- ㉣ 대진의 신고하는 경우, 근무형태를 대진으로 선택하고 '휴가자 검색' 클릭. 휴가인력, 기간 확인 후 대체기간을 입력



- ⑥ 추가 제출 자료가 있는 경우 '파일첨부'에 해당 자료첨부
- ⑦ 별도 기재사항은 '전달사항' 란에 입력
- ⑧ 작성자 정보등록에 신고자와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하단의 '최종제출' 버튼 클릭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의료기사 신고)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 · 변경' 선택
- 2 '인력' 선택
- 3 '의료기사 신고' 클릭

※ 신규, 변경 퇴사 건에 따른 진행은 의(약/조산)사와 동일



- #### ④ '기본정보' 신고사항 입력 후 임시저장

- ㉠ 면허종별(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완화의료도우미), 입사일자, 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 **면허확인** 클릭
- ㉡ 면허확인 시 **조회 되지 않는 경우**, 수기 입력 후 **면허사본 첨부**하여 신고진행
- ㉢ 물리치료사는 ‘상근’, ‘비상근’, ‘대체’로 근무형태 구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완화의료도우미는 근무형태 ‘상근’ 인력만 신고

의료기사 정보변경

기본정보 5 자격등록 휴가등록 근무병동

5 의료기사 자격 신고항목 [자격조회]를 클릭하면 자격번호 및 자격취득일자 자동입력됩니다. [자격추가] [자격삭제] [전체삭제] • 총: 1 건

구분	자격종별	자격조회	자격번호	자격취득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신규	--	자격조회				9999-12-31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5 교육이수 정보 신고항목 - 보바스 등의 교육이수는 120시간 이상시 신고가능합니다. [교육추가] [교육삭제] [전체삭제] • 총: 0 건

구분	교육이수종별	자격조회	교육이수번호	인정일자
----	--------	------	--------	------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임시저장 취소

5 '자격등록' 신고사항 입력 후 임시저장

- ㉠ '의료기사 자격 신고 항목'은 사회복지사와 완화의료도우미에 한하여 신고
- ㉡ 자격종별 선택 후 자격조회 클릭(자격조회 되지 않는 경우, 수기 입력 후 사본 첨부하여 신고진행)
- ㉢ 보바스, NDT, 보이타 120시간 이상 이수자의 경우 교육이수 정보 신고
- ㉣ '교육추가' 클릭하여 해당 종별 선택 후, 세부사항 입력

의료기사 정보변경

기본정보 6 휴가등록 근무병동

6 휴가(교육, 연수, 파견) 현황 • 총: 0 건

휴가구분	시작일자	종료일자	성명	대체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수정
------	------	------	----	-----	------	------	----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타기관 "파견" 신고시 퇴사신고를 하셔야합니다.

6 휴가(교육, 연수, 파견) 신고항목 [휴가추가] [휴가삭제] [전체삭제] • 총: 1 건

구분	휴가구분	시작일자	종료일자
신규	--		

--
출산
육아
연수
병가
기타
무급휴가

6 임시저장 취소

6 '휴가등록' 신고사항 입력 후 임시저장

- ㉠ 차등제 등 가산 산정 제외 시 '휴가(교육, 연수, 파견) 신고항목' 입력 필수
- ㉡ '휴가추가' 클릭하여 휴가구분 선택, 상세내용 입력

의료기사 정보변경

기본정보 자격등록 휴가등록 7 근무병동

7 근무병동 신고항목 [병동찾기] [초기화]

근무병동	변경전	변경후
병동코드		170
병동명		혈액은행
단위코드		001
단위명		혈액은행
적용일자		9999-12-31
전담여부		N

7 임시저장 취소

7 병동찾기 버튼 클릭시 "혈액은행" 목록 조회 안되는 경우

- 시설신고/차등제운영병상현황 신고에서 신규병동 클릭 후 병동구분에 "특수", 병동코드 "혈액은행" 신고
- 시설신고/시설변경(허가병상신고)/기타병실현황에서 "혈액은행" 신고 이후 조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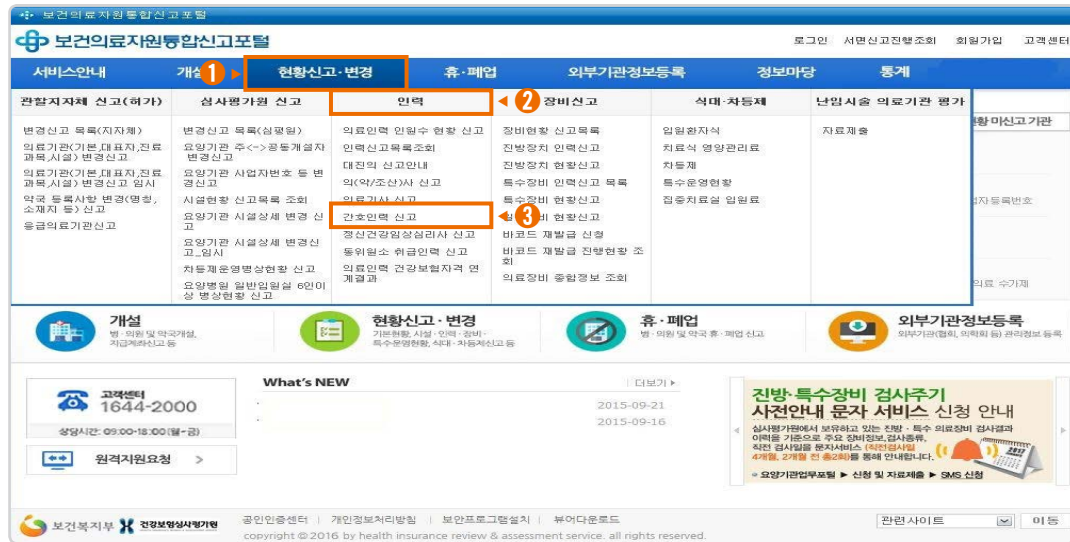
7 병동찾기 버튼 클릭시 "가정형호스피스" 목록 조회 안되는 경우

- 시설신고/차등제운영병상현황 신고에서 신규병동 클릭 후 병동구분에 "특수", 병동코드 "가정형호스피스" 신고

7 '근무병동' 신고사항 입력 후 임시저장

- ㉠ 입사병리사, 사회복지사에 한하여 '근무병동 신고항목' 입력
- ㉡ '병동찾기' 클릭하여 병동근무 시작일자 입력 ※ 입력 완료 후 최종제출 절차는 의(약)조산사와 동일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간호인력 신고)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② '인력' 선택

③ '간호인력 신고' 클릭

※ 신규, 변경 퇴사 건에 따른 진행은 의(약/조산)사와 동일

④ '기본정보' 신고사항 입력 후 임시저장

㉠ 기본정보 입력 시 면허종별, 입사일자, 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 면허확인 클릭

㉡ 면허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수기 입력 후 면허사본 첨부하여 신고

㉢ 병동찾기 클릭하여 근무병동 선택 후 상세 정보 입력

㉣ 직종 선택 입력 시, 근무병동과 맞추어 일반·의료급여정신과·요양병원 차등인력은 정규직/계약직, 중환자실·완화병동·감염관리실 차등인력은 전일제/단시간으로 입력

※ 간호 인력은 차등제 산정 인력과 전문 간호사에 한하여 상세 신고

간호인력 정보변경

기본정보 5 ▶ **자격등록** 휴가등록

▶ **간호인력 자격 신고항목** [자격조회]를 클릭하면 자격번호 및 자격취득일자 자동입력됩니다. [자격추가] [자격삭제] [전체삭제] • 총 : 1 건

구분	자격종별	자격조회	자격번호	자격취득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신규	--	자격조회				9999-12-31

가정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감염관리전문간호사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정신보건간호사 1급
정신보건간호사 2급

▶ **교육/경력 이수정보 신고항목** [교육/경력추가] [교육/경력삭제] [취소] • 총 : 1 건

구분	교육이수종별	자격조회	교육이수번호	인정일자
신규	--	자격조회		

▶ **경력 정보 신고항목** [경력정보추가] [경력삭제] [전체삭제] • 총 : 1 건

구분	기관구분	기관기호	요양기관명	경력시작일자
신규	--	-----		

5 ▶ **임시저장** [취소]

5 '자격등록'신고사항 입력 후 임시저장

- ㉠ 전문 간호사 자격소지자에 한하여 '간호인력 자격 신고 항목' 입력
- ㉡ '자격추가' 클릭하여 자격종별 선택 후 자격조회 진행
- ㉢ 자격조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수기 입력 후 사본 첨부하여 신고
- ㉣ 교육·경력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경력추가' 클릭하여 교육이수종별 입력
- ㉤ '경력 정보 신고 항목'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에 한하여 입력
 - ※ '휴가등록'및 최종제출 절차는 의(약/조산)사와 동일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정신보건임상심리사/동위원소취급인력 신고)

보건복지부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서면신고진행조회 회원가입 고객센터

서비스안내 개1 ▶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외부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통계

관할지자체 신고(허가) 심사평가원 신고 **인력** 2 장비신고 식대·차등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변경신고 목록(지자체) 변경신고 목록(심사평가원) 의료인력 인원수 현황 신고 장비현황 신고목록 입원환자식

의료기관(기본,대표자,진료과목,시설) 변경신고 요양기관 주<->공동개설자 변경신고 인력신고목록조회 진방장치 인력신고 치료식 영양관리료

의료기관(기본,대표자,진료과목,시설) 변경신고 임시 요양기관 사업자번호 등 변경신고 대진외 신고안내 의(약/조산)사 신고 진방장치 현황신고 차등제

약국 등록사항 변경(명칭,소재지 등) 신고 시설현황 신고목록 조회 의료기사 신고 의(약/조산)사 신고 특수장비 인력신고 목록 특수운영현황

응급의료기관신고 요양기관 시설상세 변경신고 간호인력 신고 가호인력 신고 일반장비 현황신고 집중치료실 입원료

요양기관 시설상세 변경신고 임시 요양기관 운영명세 변경신고 차등제 운영명세 변경신고 의료인력 건강보험자격 연계결과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신고 동위원소 취급인력 신고

바코드 개발금 신청 바코드 개발금 진행현황 조회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What's NEW

고객센터 1644-2000

상당시간: 09:00~18:00(월~금)

원격지원요청

2015-09-21

2015-09-16

진방·특수장비 검사주기 사전안내 문자 서비스 신청 안내

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방·특수 의료장비 검사결과 이력을 기준으로 주요 장비정보, 검사종류, 인력 검사일을 문자서비스(이메일, 문자)로 4개월, 2개월 전 총2회를 통해 안내합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 ▶ 신청 및 자료제출 ▶ SMS 신청

보건복지부 X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인인증센터 | 개인정보처리방침 | 보안프로그램설치 | 부가다문로드

copyright © 2016 by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all rights reserved.

관련사이트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 2 '인력' 선택
- 3 '정신보건임상심리사신고' / '동위원소취급인력신고' 선택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보변경

기본정보 휴가등록 4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기본정보 신고항목

면허종별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최종근무일	
입사일자		주민번호	- 면허확인
성명		면허번호	
면허취득일자		직책	
근무형태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신고 안내

- 기간제 전문요원은 정규직의 근무조건으로 3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시 계약직(1인)으로 신고합니다.
- 주 3일 이상, 주 20시간 이상 시간제, 격일제 전문요원과 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해 수련기관에서 (수련기간 1년 이상 경과자로) 현재 수련중인 자는 임시직(0.5인)으로 신고

4 ▶ 임시저장 취소

동위원소취급인력 정보변경

기본정보 4

▶ 동위원소취급인력 기본정보 신고항목

면허종별	--	근무형태	상근
입사일자		최종근무일	
성명		주민번호	- 면허확인
면허취득일자		면허번호	

4 ▶ 임시저장 취소

4 '기본정보'신고사항 입력 후 임시저장

- ① 의료급여정신과 차등제 산정 인력에 한하여 '기본정보'입력
- ㉠ 필수정보 입력 후, 면허확인 클릭(조회 안 되는 경우 수기입력 후 면허사본 첨부)
- ㉡ 동위원소취급인력 중 의사와 방사선사는 각 면허종별의 교육정보로 신고하며, '기본정보' 별도 입력하지 않음
- ㉢ 필수정보 입력 후, 면허확인 클릭(조회 안 되는 경우 수기입력 후 면허사본 첨부)
 - ※ '휴가등록'및 최종제출 절차는 의(약/조산)사와 동일

1-2 자주하는 질문(FAQ)

연번	질 의	답 변
1	집중영양치료를 산정을 위한 간호사 신고 시, 영양치료교육 등록방법이 궁금합니다.	- 기본정보에서 “근무병동 집중영양치료팀”등록 후 교육/경력이수정보에서 교육/경력추가”클릭하여 영양치료 연수 수료자 입력. ※ 병동 등록을 선행하여야 교육이수종별을 확인·등록 할 수 있음. ※ 교육 인정: 보험급여과-3997호(2018.5.1.) 유권해석 참고
2	신고포털 휴가자 임시저장 후 대진의 입사신고 시 휴가자 검색이 안됩니다.	- 신규 입사하는 대진의 입사일자를 휴가자의 휴가시작일자와 동일하게 입력한 후 휴가자 검색을 했는지 확인 필요. - 대진과의 휴가자가 같은 면허종별인지 확인 필요. (의사는 한의사를 대진 할 수 없음) - 휴가자가 비상근일 경우는 대진의 신고 불가능.
3	통합신고포털에서 물리치료사 신규 신고시 입력화면에서 인력종별에 물리치료사가 안보입니다.	요양기관 현황에 물리치료실 병실 또는 병상이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경우 물리치료사 신규 입사 불가능.
4	신고포털에서 인력 신고 시, 전달사항 내 개인정보 입력 후 최종제출 하면 오류창이 뜹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거, 전달사항을 통한 주민번호 기재 불가. - 신고사항으로 주민번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 서면 또는 팩스로 신고.
5	안전관리 책임자 등록 시 '조회되는 인력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 신규 책임자로 지정 등록 시 등록하려는 책임자가 해당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확인 필요. - 만약 해당 자격증이 없다면 직접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여 임시저장 버튼 클릭. - 한의사는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 불가.
6	퇴사한 인력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나요?	해당 인력(의(약/조산)사, 의료기사, 간호인력 등) 신고 메뉴에서 퇴사자포함 조회 체크한 후, 조회하여 해당 인력의 이력조회 가능.
7	신고포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인력 신고시, “현재 폐업중입니다. 현황조회는 가능하지만 임시저장 및 최종제출 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뜹니다.	부여받은 기관 기호에 대한 지정일자를 확인해 보아야 함. 해당 일자 전에는 신고가 불가토록 되어 있음.

2. 요양기관 시설 현황 신고

2-1 시설 현황 신고

알아두기

- '16년 1월 1일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의 시행으로 의료기관의 주요 시설의 합은 지자체로 신고하고, 상세내역은 심사평가원으로 신고함
- 시설별 신고 접수기관 및 신고범위

구분	관할 지자체(시·도, 시·군·구)	심사평가원(본·지원)
허가 병상	- 허가병상 총 병실·병상수 —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병동,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 허가병상 상세내역 — 상급·일반, 1~다인실, 성인소아·신생아, 음압·비음압 등
특수 병상	- 주요 특수진료실 병실·병상수 —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물리치료실, 임상검사실, 조제실, 당전실	- 기타 특수진료실 병실·병상수 — 분만실, 신생아실, 인공신장실, 강내치료실, 방사선옥소, 낮병동, 조혈모처치실, 혈액은행, 모자동실
기타	- 기타 시설의 보유여부 관리 — 구급자동차, 세탁물처리시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소독시설 등	- 차등제 병상내역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병상, 완화의료지정병상 등

진행 절차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 관할 지자체 신고(허가), 심사평가원 신고 해당 변경 신고항목 선택 후 입력·진행
 - 지자체 신고: 관할 지자체 신고(허가) → 의료기관(기관, 대표자, 진료과목, 시설) 변경신고
 - 심사평가원 신고: 심사평가원 신고 → 요양기관 시설상세 변경 신고 또는 차등제운영병상현황 신고

구분	관할 지자체	심사평가원
병원급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의원급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호·제2호의2·제3호·제5호·제8호·제9호서식
부속 의료 기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공통 제출서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포털신고 시 제출 불필요), 기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관할지자체 신고)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 '관할지자체 신고(허가)' 선택
- '의료기관(기본, 대표자, 진료과목, 시설)' 변경신고 클릭

의료기관(기본,대표자,진료과목,시설) 변경신고

기본 전 4 시설 최종제출 7

출(운영,허가) 병실 및 병상 현황

출원영수	병실	병상	변경전 출원가수	병실	병상	변경후 출원가수	병실	병상
시설출원액(m²)	변경전		m²	변경후		m²	기본 적용일	

5 2 병실 및 병상현황

구분	변경전		변경후	
	현태	허가사항	현태	허가사항
입원병실	일반입원실	면적(m²) 병상수 병상수	일반입원실	면적(m²) 병상수 병상수
	정신과병실		정신과병실	
	중환자실	성인소아 신생아	중환자실	성인소아 신생아
	격리병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무균치료실		

5 3 특수진료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수술실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회복실		
응급실		
물리치료실		
구분	유/무	유/무
방진실	내부 외부 원외공동이용	내부 외부 원외공동이용
임상검사실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조제실	있음 없음	있음 없음

5 4 기타시설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급식시설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4 '시설' 탭 클릭
- 5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기타시설에 대한 변경내역을 '변경 후'란에 데이터 입력
- 6 신고(허가)하는 시설의 변경 적용일 선택
- 7 변경이 완료된 후 '임시저장' 클릭 후 최종 제출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시설현황 신고목록 조회)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안내 개 1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외부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통계

관할지자체 신고(허가) 심사평가원 신고 2 인력 장비신고 식대·차등제

변경신고 목록(지자체) 의료인력 인원수 현황 신고 장비현황 신고목록 입원관리자 신고기관 현황 마신고기관
의료기관(기본,대표자,진료과목,시설) 변경신고 인력신고 목록조회 진료장차 인력신고 치료적 영향관리료 신고
의료기관 시설변경(병상,소계지 등) 신고 대환의 신고안내 진료장차 현황신고 차등제 신고
3 시설현황 신고목록 조회 의료기사 신고 의료기사 신고 차등제 신고
의료기관 시설변경(병상,소계지 등) 신고 간호인력 신고 일반장비 현황신고 차등제 신고
차등제 운영명상현황 신고 장신보관함상설신고 신고 일반장비 현황신고 차등제 신고
차등제 운영명상현황 신고 동위원소 취급인력 신고 바코드 개발금 신청 차등제 신고
의료인력 건강보험자격 연계 의료장비 중합정보 조회 의료장비 중합정보 조회

What's NEW

- 2017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
- 의료장비 현황신고 대상 장비 및 기재...
- 종합병원 심사업무 지원 미만에 따른 ...
- 2017년 1/4분기 적용 요양기관 ...
- 신생아 중환자실 고시 개편 관련 안내...

고객센터 1644-2000

원격지원요청

보건복지부 X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인인증센터 | 개인정보처리방침 | 보안프로그램설치 | 뷰어다운로드

copyright © 2016 by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all rights reserved.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 2 '심사평가원 신고' 선택
- 3 '시설현황 신고목록 조회' 클릭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안내 개 1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외부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통계

현황신고·변경

시설현황 신고목록 조회

4 접수일자 2016-10-01 ~ 2017-05-17 4 시설변경 4 차등제운영명상

5 시설변경 신고목록

접수번호	명칭	접수일시	처리상태	처리일시	현황구분	전달사항	접수확인
2017-04-20 10:45:49	신생아(격리)관동	2017-04-20 10:46:20	자동제명상신고				

6 접수내역

- 4 기 신고건이 있을 경우 신고일자 선택 후 조회버튼 클릭 시 신고내역 조회 확인 가능
- 5 기 신고건이 없을 경우 '시설변경 신규신고' 혹은 '차등제운영명상현황 신규신고' 클릭하여 신규변경 신고
- 6 '접수내역' 클릭 시 접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심사평가원 신고(허가병상 상세내역, 특수진료실 등)

-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 ② '심사평가원 신고' 선택
- ③ '요양기관 시설상세 변경 신고' 클릭

- ④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기타시설에 대한 변경내역을 '변경 후'란에 데이터 입력
- ⑤ 신고(허가)하는 시설의 변경 적용일 선택
- ⑥ 변경이 완료된 후 '임시저장'클릭 후 최종 제출

※ 병실의 허가병상은 지자체 관리 항목이므로 변경을 원할 경우 '현황신고·변경' ▶ '관할 지자체 신고(허가)' ▶ '의료기관(기본, 대표자, 진료과목, 시설) 변경신고' 메뉴에서 먼저 변경신고 해야함(관할 지자체 신고 부분 참고)

※ 종합병원급 이상은 1인실이 상급병실(상급병실 2,3인실이 사라짐) 그 외 모든 중별은 1~3인실이 상급병실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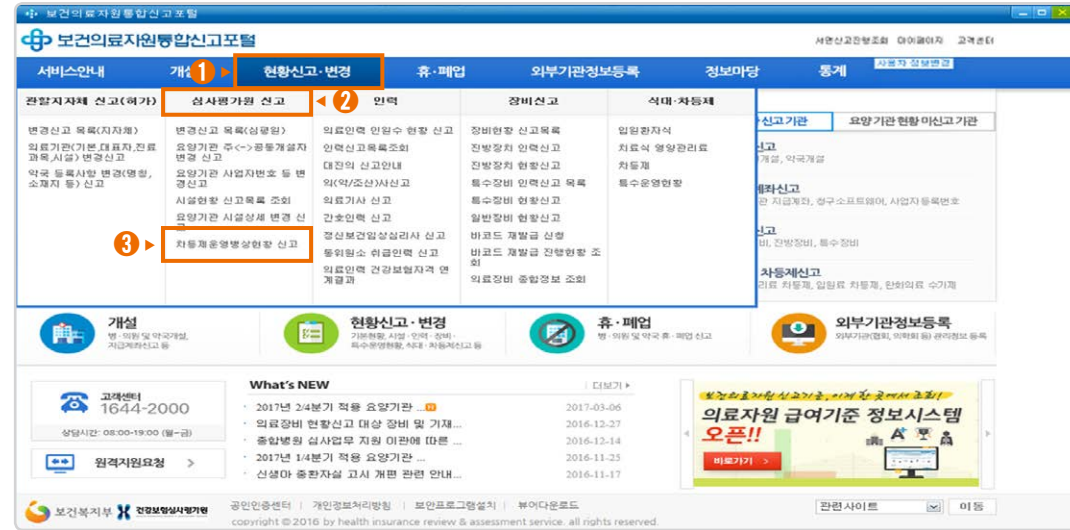
※ 실제 기준 병실·병상수와 입원료 기준 병실·병상 수의 합은 동일해야 함.

실제 기준 병실·병상수 : 물리적인 병실·병상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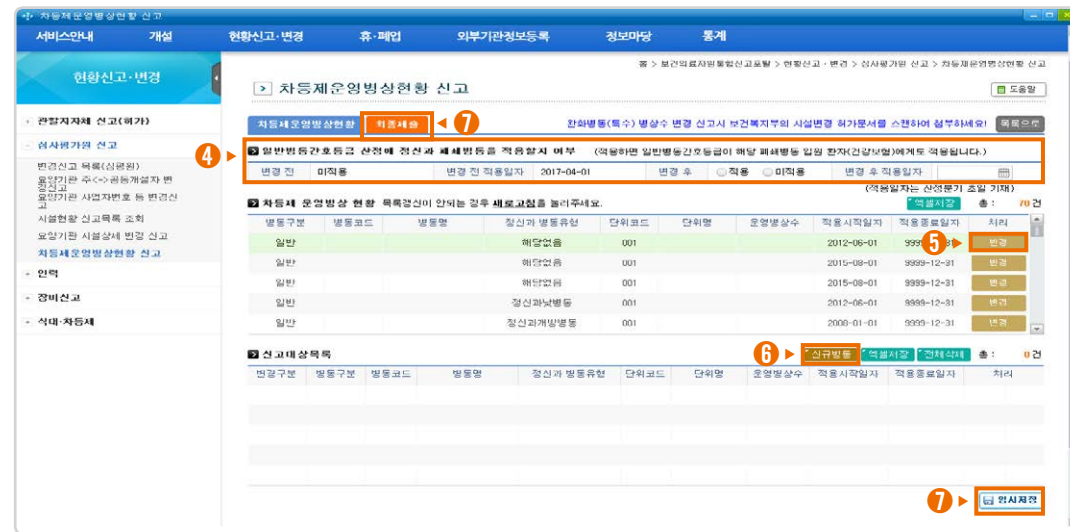
입원료 기준 병실·병상 수 :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산정하는 입원료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병실·병상 수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심사평가원 신고(차등제 운영병상))

2-2 자주하는 질문(FAQ)



-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 ② '심사평가원 신고' 선택
- ③ '차등제운영병상현황 신고' 클릭



- ④ 정신과 폐쇄병동을 일반병동간호등급에 적용여부 및 적용일자 정보를 입력
- ⑤ 기존 차등제 운영병상 현황 목록에서 변경을 클릭하여 기존 병동정보를 변경
- ⑥ 신규병동 신고 시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
- ⑦ '임시저장' 클릭 후 최종 제출

연번	질 의	답 변																																																																																																																												
1	중환자실, 응급실내 격리실은 중환자실, 응급실 중 어느 격리실 병상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 제1항 바 '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 조항으로 의료법상 중환자실이 아니라 격리실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 중환자실, 응급실내 격리실은 각각 중환자실 및 응급실 병상으로 포함해야함. ※ 별표4 제1항은 중환자실에 설치하더라도 종합병원의 음압격리실 필수설치 병상수로 인정 가능의 의미임.																																																																																																																												
2	산부인과 전문병원인데 요양기관에서 시설상세 입력시 '일반 병상70% 확보'알림과 함께 입력이 되지 않는데 병상수 입력방법이 궁금합니다.	의료법 제3조 5에 따라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일반병상을 50%만 확보하면 되나, 요양종별이 종합병원인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서면으로 시설상세 신고를 해야 함.																																																																																																																												
3	종합병원 이상급 요양기관은 2018.7월부로 2,3인실이 급여화 되고 건보법 신고서식에 변경이 있다던데 어떻게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입원병상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기존 상급병실 2,3인은 자동으로 일반병실 2,3인실과 더해 일반병실 2,3인실로 등록되며, 만약 입원료기준 병상 수 변경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는 새롭게 현황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시설현황 해당함 <table><tr><th rowspan="2">시설</th><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상급</th><th colspan="6">일반</th></tr><tr><th>1인</th><th>2인</th><th>3인</th><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h>5인</th><th>6인 이상</th></tr><tr><td rowspan="2">실제 기준</td><td>병실</td><td>2</td><td>1</td><td>1</td><td>1</td><td>1</td><td>1</td><td>1</td><td>1</td><td>1</td></tr><tr><td>병상</td><td>2</td><td>2</td><td>3</td><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r><tr><td rowspan="2">입원료 기준</td><td>병실</td><td>2</td><td>1</td><td>1</td><td></td><td></td><td></td><td>4</td><td>1</td><td>1</td></tr><tr><td>병상</td><td>2</td><td>2</td><td>3</td><td></td><td></td><td></td><td>16</td><td>5</td><td>6</td></tr></table> ↓ <table><tr><th rowspan="2">시설</th><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상급</th><th colspan="6">일반</th></tr><tr><th>1인</th><th>2인</th><th>3인</th><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h>5인</th><th>6인 이상</th></tr><tr><td rowspan="2">실제 기준</td><td>병실</td><td>2</td><td></td><td></td><td>1</td><td>2</td><td>2</td><td>1</td><td>1</td><td>1</td></tr><tr><td>병상</td><td>2</td><td>일반 2인으로 이동</td><td>일반 3인으로 이동</td><td>1</td><td>4</td><td>6</td><td>4</td><td>5</td><td>6</td></tr><tr><td rowspan="2">입원료 기준</td><td>병실</td><td>2</td><td></td><td></td><td></td><td>1</td><td>1</td><td>4</td><td>1</td><td>1</td></tr><tr><td>병상</td><td>2</td><td></td><td></td><td></td><td>2</td><td>3</td><td>16</td><td>5</td><td>6</td></tr></table>	시설	구분	상급			일반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실제 기준	병실	2	1	1	1	1	1	1	1	1	병상	2	2	3	1	2	3	4	5	6	입원료 기준	병실	2	1	1				4	1	1	병상	2	2	3				16	5	6	시설	구분	상급			일반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실제 기준	병실	2			1	2	2	1	1	1	병상	2	일반 2인으로 이동	일반 3인으로 이동	1	4	6	4	5	6	입원료 기준	병실	2				1	1	4	1	1	병상	2				2	3	16	5	6
시설	구분	상급			일반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실제 기준	병실	2	1	1	1	1	1	1	1	1																																																																																																																				
	병상	2	2	3	1	2	3	4	5	6																																																																																																																				
입원료 기준	병실	2	1	1				4	1	1																																																																																																																				
	병상	2	2	3				16	5	6																																																																																																																				
시설	구분	상급			일반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실제 기준	병실	2			1	2	2	1	1	1																																																																																																																				
	병상	2	일반 2인으로 이동	일반 3인으로 이동	1	4	6	4	5	6																																																																																																																				
입원료 기준	병실	2				1	1	4	1	1																																																																																																																				
	병상	2				2	3	16	5	6																																																																																																																				

3. 요양기관 장비 현황 신고

3-1 장비 현황 신고

알아두기

- 신고 대상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일반장비 현황을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으로 신고

진행절차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 · 변경' ▶ '장비신고' ▶ '진방장치 현황신고' (또는 '특수, 일반장비') 클릭
- 2) 장비별 신고화면에서 현황 신고
 - 진방 및 특수의료장비는 시 · 군 · 구 신고 처리시 심사평가원 신고로 간주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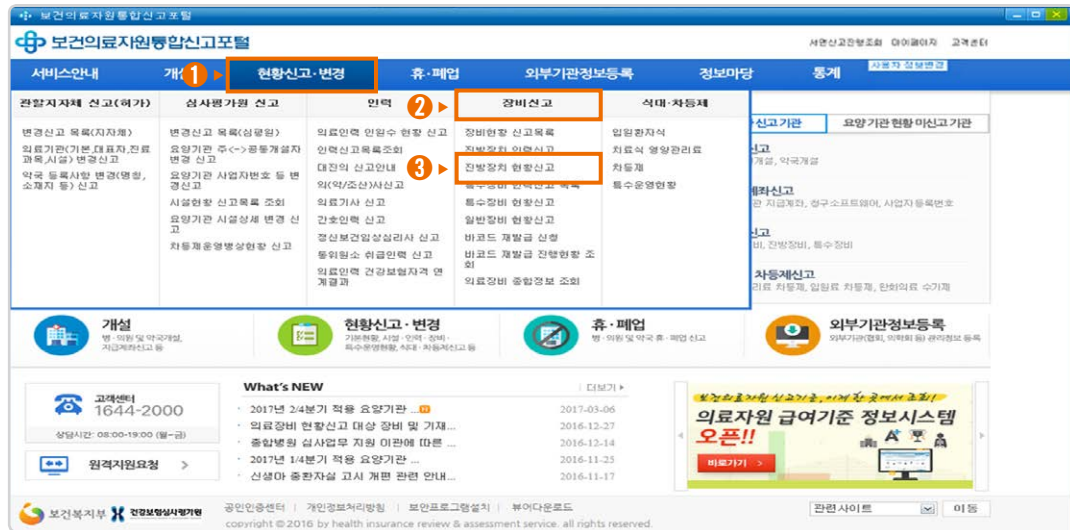
제출서류

구분	관할 지자체(시 · 도, 시 · 군 · 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 구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사본 2.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3. 진방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추가 설치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인 경우에는 제외) 4. 진방장치 신고증명서 원본(재사용 또는 양도 · 이전장비의 사용 시), 특수장비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2, 4는 생략 가능하며, 3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가 미리 선행되어야 함
특수 의료장비	1. 구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사본 2.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3.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4. 특수의료장비 운영인력기준의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5. 병상 공동활용기관의 경우 병상 공동활용 동의서(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2,3,4는 생략 가능하며, 5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
일반장비	1. 구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사본 2.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3.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대한 시설검사결과 통보 문서 4. Full PACS 정상가동일 확인 자료 및 장비현황표 각 1부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2는 생략 가능 3은 「원자력안전법」 관련 장비, 4는 Full PACS 장비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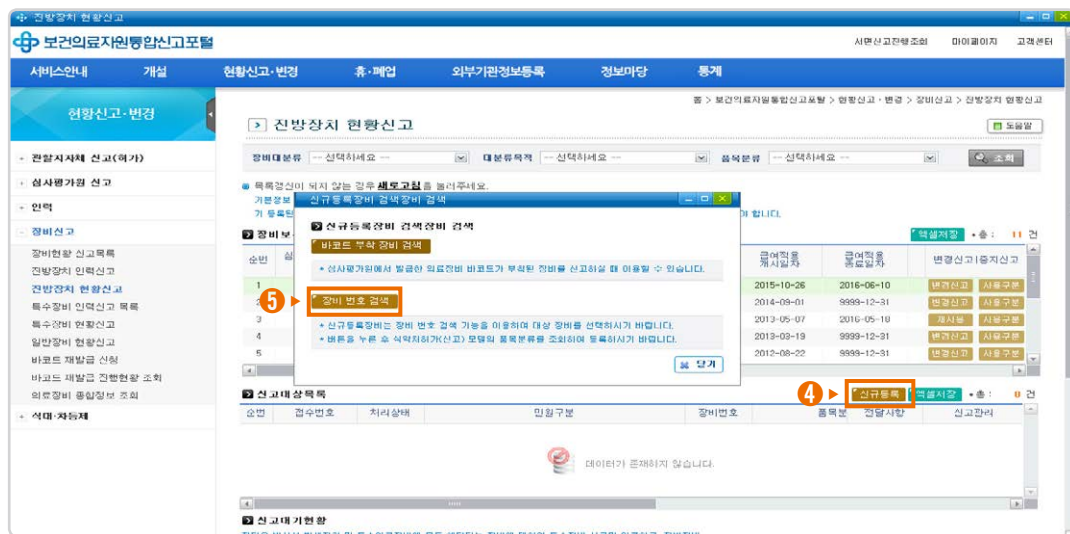
- ※ 신고 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 부문 참조
 ※ 제출방법
- 스캔 등 파일로 만들어 현황 신고시 첨부
 - 파일 첨부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 신고의 경우 팩스로 전송

연번	질 의	답 변
4	중환자실내, 응급실내 격리실이 현황신고 서식에 추가되었고, 성인 · 소아 중환자실이 성인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로 분리되었는데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 각 요양기관들이 포털전달사항으로 기신고 했던 중환자실내, 응급실내 격리실은 7.1부로 자동으로 보여 지게 됨. 다만, 이번 서식변경으로 인해 성인 · 소아 중환자실이 '성인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로 분리됨에 따라 기존 "성인 · 소아 중환자실" 현황은 "성인중환자실"로 입력되어 소아 중환자실이 있는 요양기관에서는 재신고가 필요함. ※ 일반격리실 음압기계 2인, 비음압 2인도 기존 다인 숫자에서 빠지며 표기됨.
5	일반병상 확보비용에 포함되는 병상은 어떤 병상이 있나요?	· 일반병상 확보비용에 포함되는 병상은 인실구분이 가능한 일반입원실(호스피스포함)과 정신과 폐쇄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 대상 제4조에 따르면 "의료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다만,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6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상은 100분의 5이상을 중환자실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300병상은 허가병상인가요?	· 300병상은 허가병상이며, 일반입원실(호스피스포함)과 정신과폐쇄 병상 합인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확보해야 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 의료기관정책과-1154(2014.3.11)입원실관련 유권해석 변경 알림
7	'18.7.1자 요양기관현황신고 서식에 "6인이상 병실을 운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6인이상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모두 별지15호를 제출해야 하나요?	· 6인이상을 운영하는 요양병원(다른 종별은 신고 의무 없음)은 6인이상 병실 · 병상운영 등에 대한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2018-135,18,6,29) · 다만, 제15호의 서식 개정규정은 2018. 10. 1.부터로 10.1.부터 신고가 가능. (포털 및 현황등록화면 개발예정)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 ② '장비신고' 선택
- ③ '진방장치 현황신고'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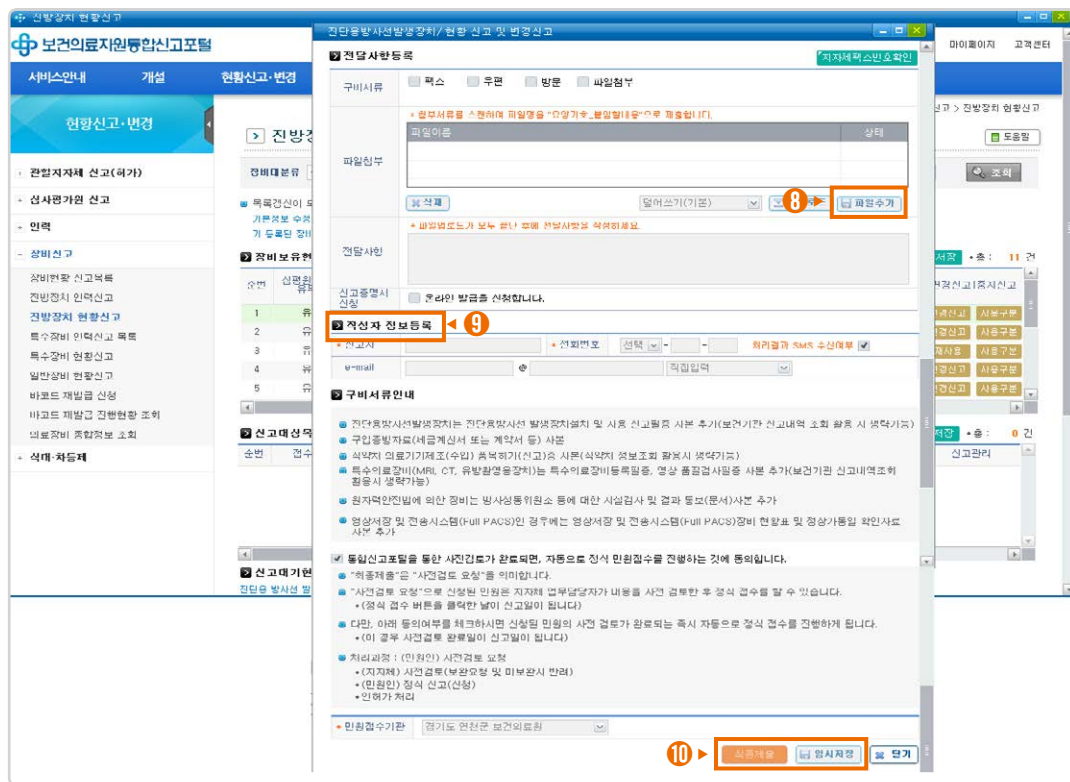
- ④ '신규등록' 클릭 시 신규등록장비 검색장비 검색 팝업 생성
- ⑤ '장비번호 검색' 클릭시 '식약처 허가(신고)정보 보건복지부 품목분류정보' 팝업 생성



- ⑥ '식약처 허가(신고)정보 보건복지부 품목분류정보'창에서 식약처 허가번호 입력 조회 후 해당 장비 번호의 적용 버튼 클릭 ▶ '현황신고 및 변경신고'화면 생성
- ※ 중고장비의 경우 바코드 검색 가능



- ⑦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기본정보, 허가/제조정보, 구입·판매·설치정보 등 필수항목을 입력
- ※ 주황색의 입력 기준 설명을 참조하여 입력



- 8 '파일추가'를 클릭하여 제출 서류 첨부
- 9 작성자 정보를 입력
- 10 '임시저장'버튼 클릭 후 '최종 제출' 클릭



- 11 양도·폐기·사용중지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 신고 대상 장비의 장비 분류를 선택 후 조회
- 12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 대상 장비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구분' 버튼 클릭
- ※ 기존 신고 사항의 변경 신고는 '변경신고', 양도·폐기·사용중지·이전은 '사용구분'
- 13 '변경신고' 클릭시 기존 신고된 현황 정보가 보이며, 수정할 내용을 변경 후 임시저장 ▶ 최종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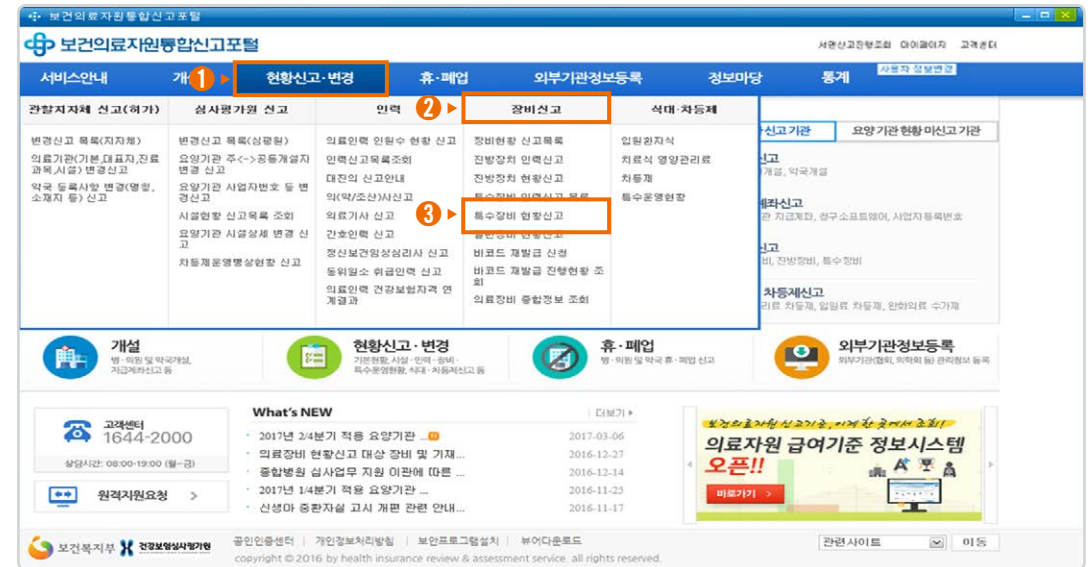


- 14 양도·폐기·사용중지·이전 신고는 ‘사용구분’ 클릭하여 사용중지 구분을 선택 후 양도·폐기 등 (중지) 적용일자 입력, 양도 및 폐기시에는 ‘인수인’ 란 입력
- 15 변경 신고와 같이 ‘임시저장’ 후 최종 제출

[참고: 신고 유형별 구비 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설치 및 (재) 사용신고 (별지 제1호서식)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시 제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시 사본 제출 가능)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시 생략)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시 생략 가능) 7. 의뢰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시 생략 가능) 8. 세무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 ·검임 신고 (별지 제6호서식)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
	신고사항 변경신고 (별지 제5호서식)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시 생략 가능)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사용중지· 양도·이전· 폐기신고 (별지 제2호서식)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시 생략 가능) 2.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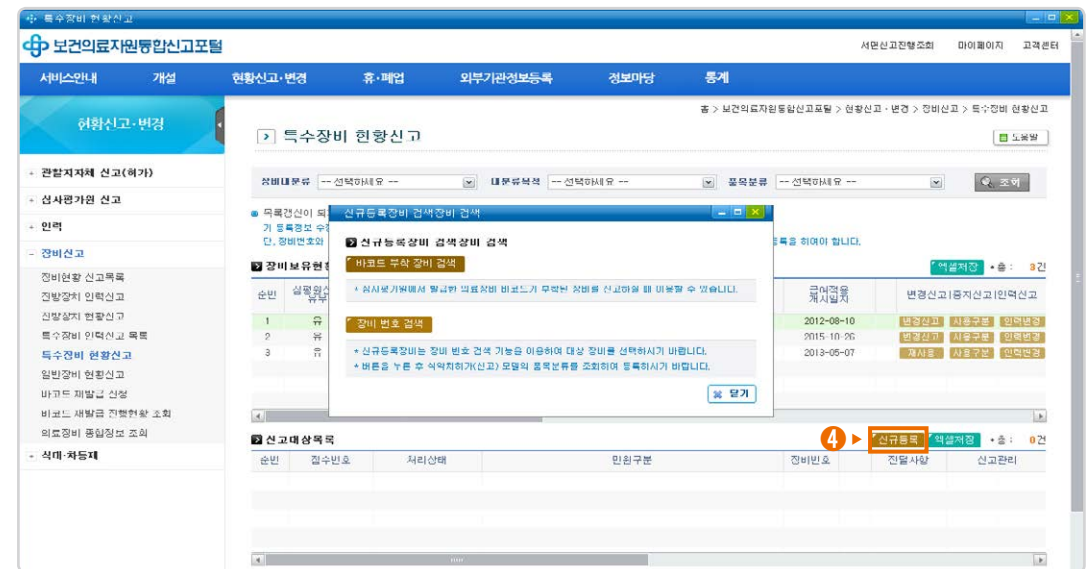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특수의료장비)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② '장비신고' 선택

③ '특수장비 현황신고' 클릭



④ '신규등록' 클릭 시 신규등록장비 검색장비 검색 팝업 생성

※ 장비번호 검색 등 이후 신고 절차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동일

[참고: 신고 유형별 구비 서류]

구 분	구비 서류
특수 의료 장비	등록신청 (별지 제1호서식) 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시 제출 생략 가능)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시 제출 생략 가능) 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시 사본으로 제출 가능)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시 제출 생략 가능) 5.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인력등록사항 변경 (별지 제5호서식)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시 생략 가능)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시 생략 가능)
	시설등록사항/개설자/의료기관명칭/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 (별지 제6호서식)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시 생략 가능)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시 제출 생략 가능) 3.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시 제출 생략 가능) 4.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양도·폐기·사용중지 (별지 제7호서식)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통보시 생략 가능) 2.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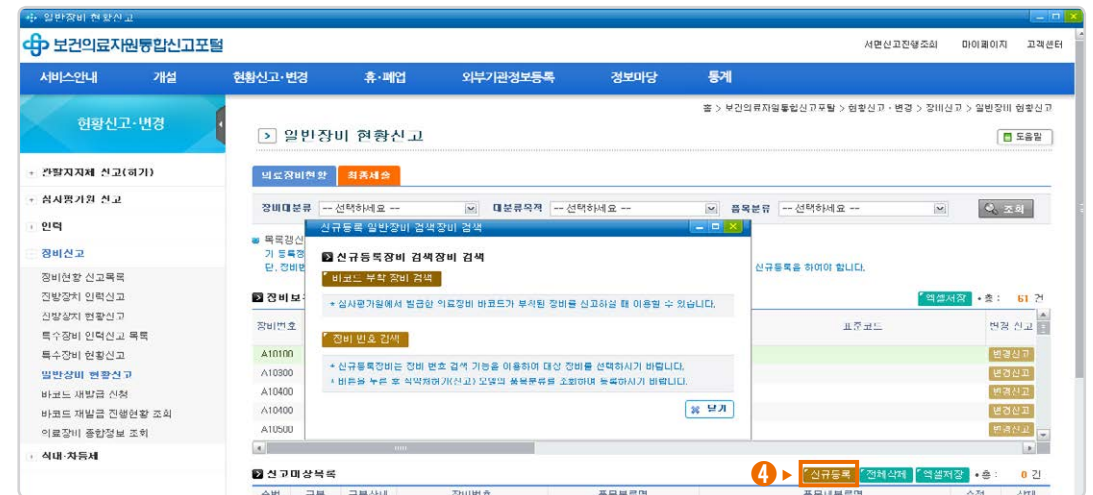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일반장비)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② '장비신고' 선택

③ '일반장비 현황신고' 클릭



④ '신규등록' 클릭 시 신규등록장비 검색장비 검색 팝업 생성

※ 장비번호 검색 등 이 후 신고 절차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동일
단, 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양도·폐기 등 사용중지 신고 모두 '변경신고'버튼을 눌러 진행

[참고: 신고 유형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일반 장비	1. 구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사본 2.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3.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대한 시설검사결과와 통보 문서 4. Full PACS장비의 경우 정상가동일 확인 자료 및 장비현황표 각 1부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2는 생략 가능/ 3은 「원자력안전법」 관련 장비, 4는 Full PACS 장비만 해당

3-2 의료장비 바코드 심벌 온라인 발급

알아두기

- CT 등 23종 장비*에 대해 바코드를 부여받으면 그 심벌을 출력하여 장비에 부착 후 심평원에 부착 회신

* 바코드 대상 장비 : 특수의료장비 및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등 23종 장비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PET-CT), 엑스선촬영·투시장치, 혈관조영촬영장치, C-Arm형 엑스선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일반엑스선촬영장치, 치과용방사선 촬영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콘빔 CT, 골밀도검사기, 감마카메라, 초음파 영상진단기, 선형가속기, 후장전치료기,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토모테라피, 중성자치료기, 양성자치료기, 혈액방사선조사기

진행 절차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정보마당' ▶ '마이페이지' ▶ '증명서 발급' ▶ 장비 바코드 ▶ 바코드 출력 ▶ 우편신청(우편으로 심벌 수령을 원하는 기관)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일반장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합설치 합니다

■ 프로그램 설치 내역

프로그램 명	기능	설치 상태
설치 프로그램	신고포털 솔루션 관련 설치 프로그램 목록(다운로드 후 실행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UI 솔루션(XPlatform)	UI 처리 프로그램	설치됨
XPlatform 실행 프로그램(XLauncher)	XPlatform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치됨
엑스퍼트(Rexpert)	양식지 확인 및 출력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됨
파일 업로드 프로그램(DEXUploadX)	파일 업로드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됨
구간 암호화(KSignCSAPI)	구간 암호화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됨
인증서 관리(KSignToolkit)	인증서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됨
위변조방지(SecureReader)	위변조방지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됨
2D 바코드(e-Page SAFER 2D barcode)	위변조방지 2D바코드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됨
화면 캡처 방지(e-Page SAFER)	화면 캡처 방지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됨

프로그램 수동설치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포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 통합신고포털 설치 프로그램 안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설치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터넷 상단 설치 요구사항의 순서를 하략하여 설치를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설치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심사평가원 헬프데스크(1644-2000)에서 상담받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접속 후 '위변조방지' 프로그램 최신버전 설치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정보마당' 선택

③ '마이페이지' 선택

④ '증명서 발급' 선택

⑤ '장비 바코드' 선택

⑥ '바코드출력' 선택(바코드 심벌 우편수령을 원하는 기관은 ⑦ '우편신청' 선택)



⑧ '인쇄' 클릭하여 바코드 심벌 인쇄 후 장비에 부착

3-3 자주하는 질문(FAQ)

연번	질 의	답 변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 의료장비 검사결과 이력 조회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정보마당 ▶ 마이페이지 ▶ 특수 · 진방장치 검사이력 조회												
2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구매시 판독용 및 조화용 모니터를 의료용 모니터로 구매해야 하나요?	● 의료용 모니터는 필수 구매 사항은 아니며, 일반 모니터를 아래 기준에 맞춰 사용할 수 있음. - 아 래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판독용 모니터</th><th>조화용 모니터</th></tr> </thead> <tbody> <tr> <td>해상도</td><td> • 일반촬영 또는 디지털저필름용: 2,048 x 2,560이상 (14 x 17 기준) • CT/DSA/Digital fluoroscopy : 1,200 x 1,600 또는 1,600 x 1,200 이상 (LCD인 경우 1,280 x 1,024 이상) </td><td> • 1,200x1,600 또는 1,600x1,200 이상 (LCD모니터 사용시 1,024 x 768이상) </td></tr> <tr> <td>크기</td><td> • 20 inch equivalent 이상 (CT는 19 inch 이상) </td><td> • 17 inch(LCD는 15 inch)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9 inch(LCD는 17 inch) 이상의 모니터가 50% 이상 확보되어야 함 </td></tr> <tr> <td>모니터수</td><td> • 2대 이상 </td><td> • 각 외래 진료과목별 1대 이상 • 각 병동별 1대 이상 • 한 병동이 여러 층에 걸쳐있는 경우는 최소한 각 층별로 1대 이상 </td></tr> </tbody> </table>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9호(08.1.1. 시행))	구분	판독용 모니터	조화용 모니터	해상도	• 일반촬영 또는 디지털저필름용: 2,048 x 2,560이상 (14 x 17 기준) • CT/DSA/Digital fluoroscopy : 1,200 x 1,600 또는 1,600 x 1,200 이상 (LCD인 경우 1,280 x 1,024 이상)	• 1,200x1,600 또는 1,600x1,200 이상 (LCD모니터 사용시 1,024 x 768이상)	크기	• 20 inch equivalent 이상 (CT는 19 inch 이상)	• 17 inch(LCD는 15 inch)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9 inch(LCD는 17 inch) 이상의 모니터가 50% 이상 확보되어야 함	모니터수	• 2대 이상	• 각 외래 진료과목별 1대 이상 • 각 병동별 1대 이상 • 한 병동이 여러 층에 걸쳐있는 경우는 최소한 각 층별로 1대 이상
구분	판독용 모니터	조화용 모니터												
해상도	• 일반촬영 또는 디지털저필름용: 2,048 x 2,560이상 (14 x 17 기준) • CT/DSA/Digital fluoroscopy : 1,200 x 1,600 또는 1,600 x 1,200 이상 (LCD인 경우 1,280 x 1,024 이상)	• 1,200x1,600 또는 1,600x1,200 이상 (LCD모니터 사용시 1,024 x 768이상)												
크기	• 20 inch equivalent 이상 (CT는 19 inch 이상)	• 17 inch(LCD는 15 inch)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9 inch(LCD는 17 inch) 이상의 모니터가 50% 이상 확보되어야 함												
모니터수	• 2대 이상	• 각 외래 진료과목별 1대 이상 • 각 병동별 1대 이상 • 한 병동이 여러 층에 걸쳐있는 경우는 최소한 각 층별로 1대 이상												

연번	질 의	답 변
3	해당 장비가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일반장비,진방장비,특수장비 현황신고 ▶ 신규등록 ▶ 장비번호 검색 ▶ 식약처 허가번호 입력 후 조회버튼 - 하단에 식약처 허가(신고) 정보 및 보건복지부 품목 분류정보에서 장비번호 확인. · 'A, B, C, D, E, F'로 시작하는 장비번호가 확인되면 신고대상 장비. · 'Z'로 시작하고 해당무(신고대상 외 장비)로 확인되면 신고대상 장비 아님. ※ 보건복지부 품목분류정보가 공란이면? -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분류가 안 된 장비이므로 심평원에 문의(1644-2000)
4	식약처 기술문서를 요양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http://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 ▶ 제품정보 ▶ 제품조건 ▶ 품목허가번호 ▶ 식약처 허가번호 조회 가능
5	취하/취소된 장비도 신고할 수 있나요?	● 취하: 업체의 제조공정 문제, 재정 문제 등 - 취하된 장비는 업체의 개인적인 사유로 제조, 수입, 판매 등을 중지하고 식약처에 받은 허가를 반납하는 경우로 장비 안정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요양기관에서의 장비 신고 및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 ● 취소: 행정처분, 장비 안정성의 문제 등 - 취소된 장비는 장비 안정성의 문제나 장비 재평가 미 실시, GMP 갱신심사 미 실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 취소사유에 대한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 이 경우 본원 의료장비 기능분류 담당자(033-739-1624, 1613) 으로 문의 ※ GMP란? · 의약품 등의 제조 품질 관리에 관한 규칙
6	일반장비 장비번호, 적용개시일 변경 방법이 궁금합니다.	● 장비번호와 적용개시일은 요양기관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을 통해 수정이 불가능. - 기존 등록된 장비 삭제신고 후 재신고 하거나 포털 전달 사항을 통해 변경 요청 해야함.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매뉴얼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IV

항목별 신고

1. 특수운영현황
2. 차등제
3. 식대

HIRA

1. 특수 운영 현황

1-1 특수 운영 현황 신고

진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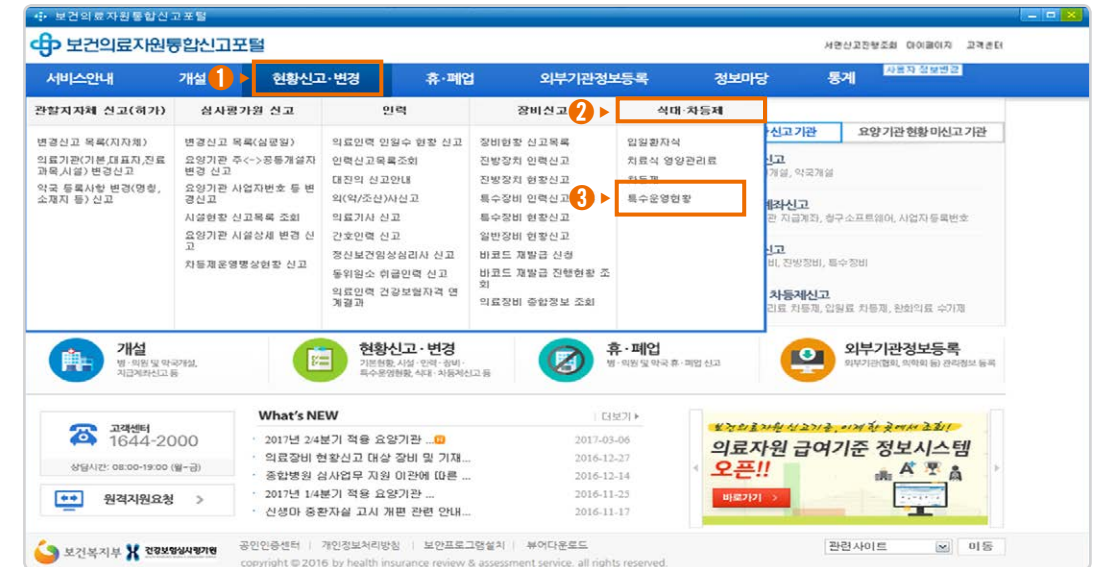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 · 변경' ▶ '식대 · 차등제' ▶ '특수운영현황' 클릭
- 2) 화면 좌측 하단의 '특수운영현황 신고' 클릭
- 3) 특수운영현황 신고목록 중 신고할 항목을 선택하여 클릭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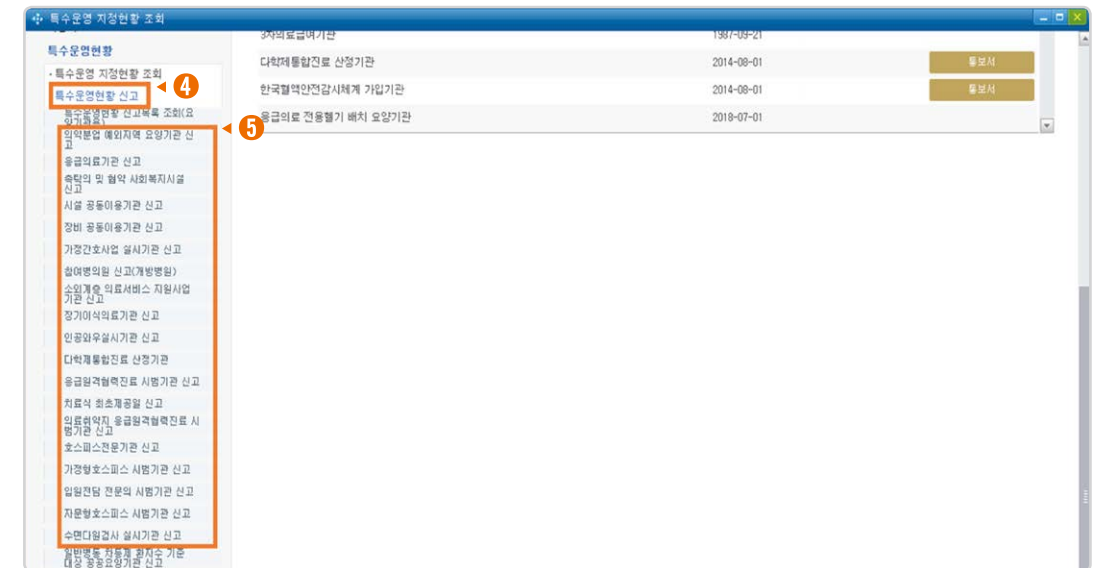
- 1) 공통서류: 요양기관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
- 2) 신고내역 별 제출(첨부)서류

구분	제출서류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신고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증, 가정간호사업실시 관계서류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기관 신고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이동차량 및 상담실 사진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시행의료기관 지정서
수면다원검사 실시기관 신고	수면다원검사실 사진
시설(장비) 공동이용기관 신고	공동이용계약서
응급의료기관 신고	응급의료기관 지정서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기관 신고	자문기관 및 의뢰기관별 현황 신고서 및 협약서
의료취약지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기관 신고	자문기관 및 의뢰기관별 현황 신고서 및 협약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요양기관 신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확인증
인공와우실시기관	인공와우수술자의 이과전문경력 및 시술 경험 증빙 서류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기관 신고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기관 지정서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기관 신고	임종실, 상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장기이식 의료기관 신고	장기이식 의료기관 지정서
참여병의원 (개방병원) 신고	개방병원 이용계약서
축택의 및 협약 사회복지시설 신고	협약(계약)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호스피스전문기관 신고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 온라인 발급 따라하기(신고 절차 (예, 호스피스 전문기관 신고))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 · 변경' 선택
- 2) '식대 · 차등제' 선택
- 3) '특수운영현황' 클릭



- 4) '특수운영현황 신고'클릭
- 5) 특수운영현황 신고목록 중 신고하고자 하는 내역을 클릭

⑥ ~ ⑦ '특수운영현황 신고' - '호스피스 전문기관 신고' 클릭

⑧ ~ ⑩ 신규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현황신고 시 '신규등록' 클릭 후 팝업창에 지정서상 지정일자 및 적용일자 기입 후 임시저장 클릭

⑪ ~ ⑬ 최종제출 탭 클릭하여 파일추가 후, 신고담당자 정보 입력

⑭ '최종 제출' 클릭

1-2 자주하는 질문(FAQ)

연번	질 의	답 변
1	입원환자 안전관리로 산정기준 및 입원환자 병문안관리규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나요?	● 입원환자 안전관리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기관 현황이 우리원에 등록되어 있고, 병상수 대비 전담인력 수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산정 가능함. ※ 병상수 대비 전담인력 수 기준 -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2명 이상 -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1명 이상 - 200병상 이상 병원급: 1명 이상 ※ 환자안전 전담인력 및 위원회 운영현황은 인증원으로 신고, 인증원에서 심평원으로 통보함. ●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위해 병문안 시간 설정 및 안내, 대장관리, 시설 또는 인력 등을 배치하여 방문객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이와 관련, 지침 및 관리시스템 내용(시설 및 인력 배치여부)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8년 7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4호, 2018.6.19.)
2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이수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교육이수 내용 등 모든 신고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원으로 신고함.(기본 인력 신고는 심평원에 신고하여야함)
3	환자안전 전담인력 신고방법(심평원)이 궁금합니다.	●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요양기관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신고한 후, 그 현황을 심평원으로 통보하고 있음. 통보받은 내역을 우리원 현황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심평원에도 인력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인력신고 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 ▶ 의(약/조산)사 신고 또는 간호인력신고 • 기존 근무인력인 경우는 해당인력 정보 우측의 변경 클릭 • 신규 인력인 경우는 하단의 신규입사 클릭 ▶ 기본정보 입력 ▶ 임시저장 ▶ 최종제출 버튼 클릭 ※ 기본정보 입력시 유의사항 - 근무병동은 구분 '기타'/병동명 '환자안전전담'으로 입력 - 간호등급 적용여부는 미적용으로 입력 ※ 근무병동 생성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심사평가원신고 ▶ 차등제운영병상현황 신고 ▶ 신규병동 클릭 • 병동구분 : 기타 / 적용일자: 전담인력의 최초배치일 • 병동명 : 환자안전전담 ※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차등제와 중복 산정 할 수 없음

연번	질 의	답 변
4	검체검사 질가산 진단검사분야 교육의사 산정을 위하여 관련 교육만 받으면 되나요?	● 교육 이수 후 반드시 이수증을 첨부하여 심평원에 신고해야함. ※ 신고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 · 변경 ▶ 인력 ▶ 의(약/조산)사신고 ▶ 교수이수의사선택 ▶ 자격등록 ▶ 검체검사 질관리 교육 신고항목 등록 (교육 이수증 파일 첨부)
5	이번달 교육 이수내역을 신고 (교육의사) 하였으나, 등급 재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 교육의사의 경우 현재 전전분기(2018년 4분기부터 전전전분기) 이수 내역을 가지고 산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이수일자와 실제 적용분기를 확인필요. - 예시) 2018년 2분기 교육이수를 한 경우 2019년 1분기 부터 등급산정에 반영
6	‘비상근 의사’가 검체검사 질 가산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적용이 가능한가요?	● 반드시 요양기관에‘상근’하는 의사여야만 적용가능. ※ 교육의사란?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의 상근의사(치과의사 포함)'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검체검사 질 가산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 의사에 해당됨
7	'18년 6월 시행된 한방병원 수가개편 관련하여, 한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이 변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8개 진료과목을 모두 설치하고 각 진료과목별 한방전문의를 충족하는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에 한해 30%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진료과목 또는 전문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시정기간 내 미충족시에는 인력변경일(결원발생일) 기준 3개월이 초과된 익일부터 종별가산율을 인하 · 적용. (‘18년 6월부터 변경기준 적용)
8	병문안 관리규정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 신고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 · 변경 ▶ 식대 · 차등제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현황 신고 ▶ 병문안 관리규정 신고 1. 관리규정 신고 1) 병문안 관리규정 신고(4개항목 모두 포함) – 병문안 허용시간대, 병문안 제한 대상, 병문안객 관리대장, 반입금지 물품 목록

연번	질 의	답 변
		2) 병문안 관리방법 신고 – 인력, 시설, 기타 중 최소 1개 이상「해당」항목이 있어야 함 – 인력을 선택한 경우 인력운영(2)과 인력상세(3) 현황 신고 – 시설을 선택한 경우 시설(4) 신고 – 기타를 선택한 경우 최종제출시 증빙자료 첨부 2. 인력운영 신고 – 운영현황, 업소명칭,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적용일자의 등록(변경)사항 입력 – 기존 등록기관의 운영이 종료되는 경우는 「운영종료」를 클릭 3. 인력상세 신고 – 성명, 주민번호, 최초/최종근무일자, 위탁여부, 근무형태의 등록(변경)사항 입력 – 기존 신고인력이 병문안 관리인력에서 제외되는 경우 「종료」클릭 4. 시설 신고 – 시설종류, 설치장소, 설치개수, 적용일자의 등록(변경)사항 입력 ※ 위의 항목에 대하여 신고 후 최종제출시 증빙자료 첨부(7.31.까지 신고완료) – 첨부자료 • 관리규정: 기관장 직인 포함된 규정 전문 • 인력신고: (전속)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근무대장 (위탁) 위탁운영계약서, 근무대장 • 시설신고: 시설 설치 도면 또는 사진 • 기타신고: 신고한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2. 차등제

2-1 차등제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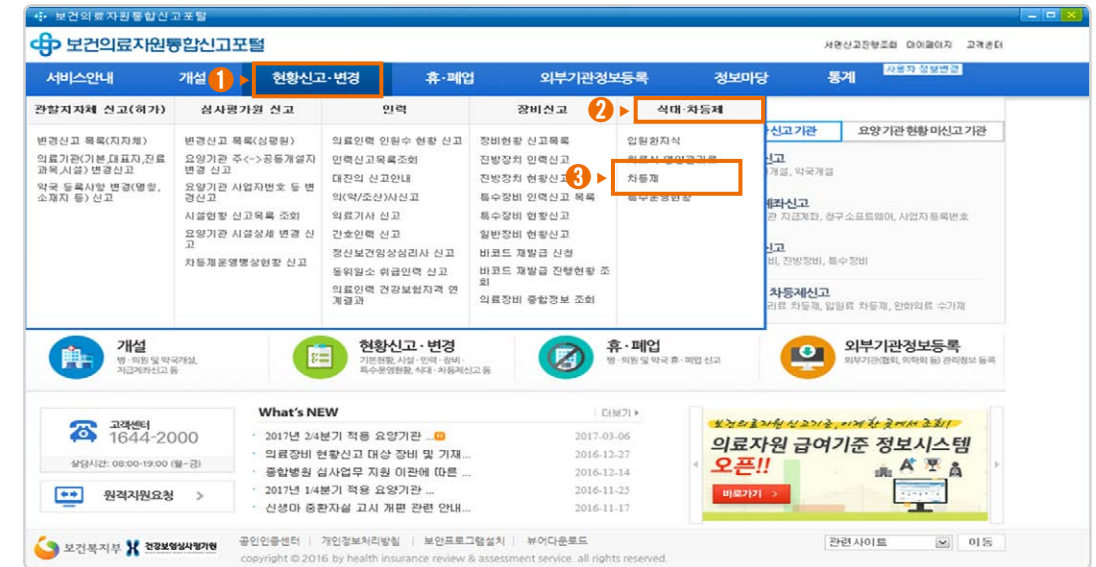
알아두기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 '식대·차등제' ▶ '특수운영현황' 클릭
- 2) 화면 좌측 하단의 '특수운영현황 신고' 클릭
- 3) 특수운영현황 신고목록 중 신고할 항목을 선택하여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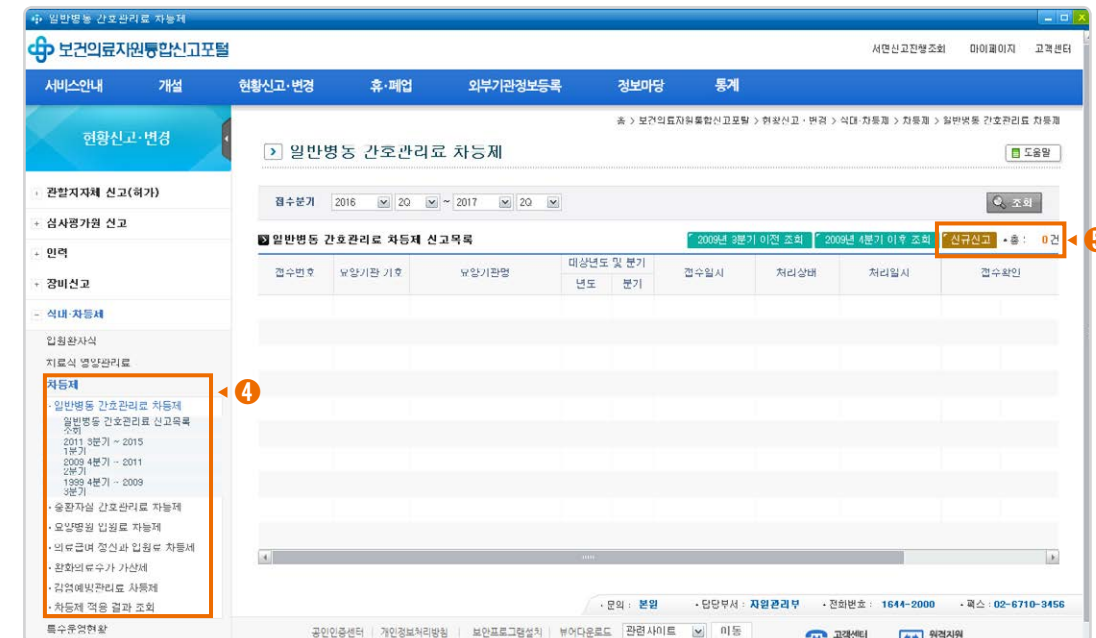
진행절차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 '식대·차등제' ▶ '차등제' 클릭
- 2) 차등제별 신고화면에서 차등제 등급, 인력·시설·장비 신고내역 확인 후 최종 제출
- 「환자 수」, 「시설·장비현황」입력이 필요한 차등제는 해당 사항 입력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 선택
- 2) '식대·차등제' 선택
- 3) '차등제' 클릭



- 4) 신고할 차등제 클릭
- 5) 신규신고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6 '환자 수 현황' 및 '시설·장비현황' 입력 후 저장

※ '환자 수', '시설·장비현황' 입력 사항이 없는 차등제는 입력하지 않음

7 전달사항이 있는 경우 전달사항등록 입력 후 최종 제출

※ 최종제출 전 차등제 등급, 인력·시설·장비 등 신고내역 확인

2-2 자주하는 질문(FAQ)

연번	질 의	답 변
1	감염예방관리로 차등제 의사인력이 3개월 분만휴가를 갈 경우 인력산정에서 제외되나요?	16일 이상 연속적 부재일 경우 동기간 동안 인력에서 제외하게 되어있으므로, 휴가를 신고하여야 하며 휴가 실시 일수만큼 재직일수에서 제외함.
2	일반병동 차등제에서 환자수 대 간호사수비 기준 적용기관의 당일 입·퇴원환자의 경우 입원환자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됨. 다만, 6시간 미만 입원으로 입원료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외됨.
3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로 산정기준에서 2인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전분기 3개월 평균 2인 이상의 야간전담간호사가 근무하여야 하며, 해당 2인이 전분기의 첫 달 15일 이전까지 야간전담간호사 인력산정기준인 '1개월 이상 야간전담간호사'로 근무해야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하고 야간전담간호사 최초 산정분기는 산정 불가능함.
4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로 등급을 요양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일반병동 차등제 신고목록 ▶ 신규신고 접속 후 접속화면에서 확인가능
5	중환자실 운영 중 새로운 Unit을 만드는 경우 전담(전문)의 가산수를 산정할 수 있나요?	신설 Unit의 경우 신설 당분기 가산수를 산정할 수 없으며, 차기분기의 경우 신설 Unit 운영일부터 당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재직일수 기준으로 산정 가능. (단, 마지막 월 15일 이후 신설Unit은 차기분기도 가산 미적용)
6	감염·예방관리로 차등제관련 감염관리실 경력 간호사의 경우 2018.4.1. 부로 종병, 병원급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는데, 2018.5.1. 신규기관인 경우 2018. 4.30.까지 365일 경력이면 되나요?	종병, 병원급의 경우 2018. 4. 1.부로 기존 및 신규기관이라 하더라도 경력 1년 산정기준은 2018. 3. 14.부로 365일 경력 간호사에 한함.
7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고위험임산부집중치료실 ('18.6.30.)을 운영할 경우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집중치료실 2개 중 1개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고, 다른 집중치료실을 새로 운영하는 기관은 포털 신고할 수 없으므로 서면신고 해야함. 또한, 최초운영분기는 최초운영일의 해당월 말일까지 운영현황을 신고하여야함. 예1) 3분기 적용의 경우 6.30일까지 신고 완료 예2) '18년 2분기는 최초 시작으로 분기 하루('18.6.30.)가 포함되며, '18.6.30.까지 '18년 2.3분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8	일반병동과 별도 시설 및 인력을 구분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의 방사선옥소치료실을 일반병동 차등제 산정에 포함하도록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허가병상에 포함: [요양기관 시설 상세신고]에서 방사선옥소치료실 일반병동 적용여부 체크하여 실제 병상수와 맞게 신고. - 운영병상에 포함: [차등제 운영병상 신고]에서 병동구분이 '특수'로 된 방사선옥소치료실은 특수병상으로 인식되어 일반병동에 포함되지 않음. 일반병동으로 포함하는 경우, 방사선옥소치료실이 위치한 곳의 일반병상 병상수에 포함하여 신고. ※ 위 두 가지를 다 등록해야 허가·운영병상의 방사선옥소치료실 병상 수가 일치함

3. 식대

3-1 식대 (입원 환자식 및 치료식 영양관리로 신고)

개요

-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따라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본식 가격에 식사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가산금액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
- 「입원환자식 신고」는 '운영현황'과 '인력현황'신고 후 최종 제출
- 「치료식 영양관리로」는 신고화면에서 '환자 수'입력 후 신고내역 확인 후 최종 제출

3-1-1 입원환자식 신고

진행 절차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 · 변경' ▶ '식대 · 차등제' ▶ '입원환자식 신고' 클릭
- 2) 운영현황 및 인력현황 신고 후 최종 제출

•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



-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 · 변경' 선택
- ② '식대 · 차등제' 선택
- ③ '입원환자식' 클릭



- ④ '입원환자식 신고' 클릭
- ⑤ '신규신고' 클릭
- ⑥ 입원환자식 신고 기간 선택 팝업창에서 '2015.10.01 이후' 클릭



- (⑦~⑧번은 운영현태가 변경된 기관에 한함)
- ⑦ '운영현황' 클릭
- ⑧ 운영현태 및 위탁업체정보 입력
- ⑨ 내용 확인 후 임시 저장

● 인력신고 방법 (운영현황만 신고시 생략)

- ① '인력현황' 클릭
- ② 기존 영양사·조리사 인력 수정시 '변경' 버튼 클릭하여 변경사항 입력
새로운 영양사·조리사 인력 신고시 '신규입력' 버튼 클릭하여 내용 입력

- ③ '신고대상목록' 부분에 접수하고자 하는 현황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 ④ '최종제출' 탭 클릭, '전달사항·첨부서류' 등록 (불필요시 생략가능)
'작성정보등록' 부분 작성 후
'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완료

3-1-2 입원환자식 신고

진행 절차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 · 변경' ▶ '식대 · 차등제' ▶ '치료식 영양관리료' 클릭
- 2) 환자 수 현황 신고 후 최종 제출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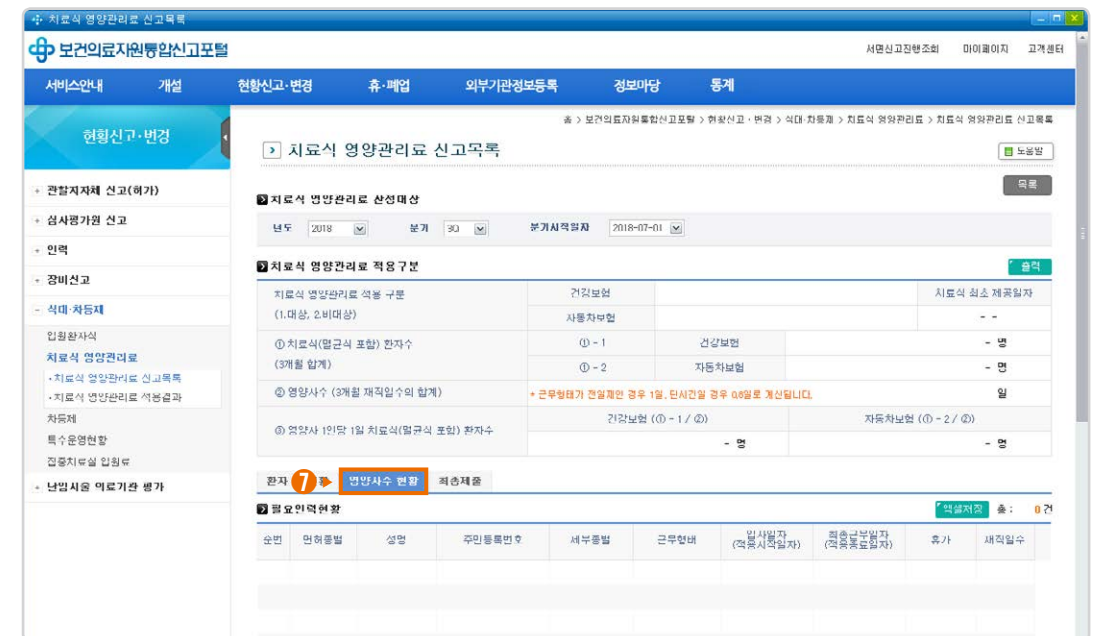
-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 · 변경' 선택
- 2) '식대 · 차등제' 선택
- 3) '치료식 영양관리료' 클릭



- 4)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목록' 선택
- 5) '신규신고' 클릭



6 '환자수현황' 입력 후 '입시저장'



7 '영양사 수 현황' 탭 클릭 후 실제 영양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

※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입원환자식' 메뉴에서 신고 완료 후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 8 '최종제출' 클릭 후 전달사항 등록
 - ※ 전달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9 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미적용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

3-2 자주하는 질문(FAQ)

연번	질 의	답 변
1	조리사 퇴사로 인한 인력 부재 발생시 16일 이내에 대체자가 입사하는 경우 '16일이상 연속적 부재'가 아니므로 인력산정이 가능한가요?	퇴사로 인한 공백인 경우는 '16일이상 연속적 부재'와 관계없이 해당기간은 인력산정이 불가함.
2	교육·상담료 청구를 위하여 임상영양사를 신고하려 하는데, 입원환자 식대 인력으로 등록방법이 궁금합니다.	입원환자 식대 담당 인력은 입원환자 식대 제공 업무와 관련된 인력만을 신고함 . 따라서, 해당 인력은 입원환자식 인력으로 신고 불필요.
3	치료식 영양관리료에서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환자에게 치료식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는 개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전분기 현황을 토대로 전분기말에 신고하여 당분기에 산정여부를 적용하는 형태로 운영됨. 따라서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환자'라는 개념은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치료식을 제공한 환자수의 합과 영양사의 동 기간동안 재직일수*를 나눈 수치를 의미함. ※ 재직일수에 공휴일 포함, 16일 이상 연속적 부재시 그 기간만큼 재직일수에서 제외함.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매뉴얼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V

기타

1. 신고일원화 민원사무별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2. 관련 법령

HIRA

1. 신고일원화 민원사무별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연번	구분		신고방법	처리절차	유의사항
1	의료 기관 개설 · 변경 신고 (허가)	개설신고 (허가)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 개설 → 의료기관 개설 (서면) 관할 사도(보건소)로 신고 (허가신청서) 제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또는 제16호 또는 제20호 서식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 ·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신고· 허가대장에 반영) · 심평원 통보(심평원 신고로 간주) · 심평원 수정통보 요청시 확인 및 수정통보 (새울시스템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 심평원 연계 이상내역)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요양기관기호 임시 부여) · 지자체 통보사항 확인 후 필요시 수정통보 요청	원스톱신고인 경우, 요양기관 현황 신고 시 인력·시설 상세 신고 생략 가능 · 다만 지자체가 수정하여 허가시, 심평원에 다시 상세 신고 필요
		요양기관 현황신고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 개설 → 지급계좌신고 (서면) 관할 지역 심평원으로 신고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 신고처리(요양기관기호 확정), 요양기관 통보(공문 등)	신고 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건보공단 요양기관인증서 발급 신청, 대진의 및 의료인 수 변경신고 가능
		변경 신고 (허가)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 인증서) → 현황신고·변경 → 기본/진료과목, 시설 · 개설신고증명서(허가증) 제출 생략 (서면) 관할 시·도(보건소)로 신고 (허가신청서) 제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또는 제16호 또는 제20호 서식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 ·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신고· 허가대장에 반영) · 심평원 통보(심평원 신고로 간주) · 기타변경사항인 경우, 서면신고건은 직권수정(온라인 신고건은 사전 검토 승인시 대장에 반영) · 심평원 수정통보 요청시 확인 및 수정통보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 지자체 통보사항 확인 후 필요시 수정통보 요청	원스톱신고할 경우, 시설현황①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추가 신고 불필요(입원병상 상세(1~6인실, 외국인전용, 음압/비음압), 의료법 외 특수진료실(분만실, 인공신장실 등)) · 지자체 수정시 심평원 수정 신고 필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 (시설현황 ① 관련 국민건강 보험법 추가사항 등)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 인증서) → 현황신고·변경 → 기본/진료 과목, 시설, 인력, 식대·차등제 (서면) 관할 지역 심평원으로 신고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주개설자 ↔ 공동개설자 변경은 지자체 신고사항이 아니므로 심평원에서 신고처리하고 지자체 대장에 자동 반영됨 · 심평원은 새 요양기관 기호에 지자체 개설등록 정보 자동 이관(기관현황, 개설자현황)
2	의원급 의료기관 대진의 신고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변경 → 인력 (서면) 관할 지역 심평원으로 신고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7호 서식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 신고처리 후 지자체 통보 (지자체 신고로 간주) · 지자체 수정통보 요청시 확인 및 수정통보 (지자체) 통보내역 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적용함에 따라 의료법 제92조에 따른 과태료는 미부과
3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변경 → 기본/진료 과목, 시설, 인력, 식대·차등제 (서면) 관할 지역 심평원으로 신고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7호 서식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 신고처리 후 지자체 통보 (지자체 신고로 간주) · 지자체 수정통보 요청시 확인 및 수정통보 (지자체) 통보내역 확인 · 의원급 의료기관 대진의 및 의료인 수 변경(신고)은 시스템 자동반영 ·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허가)은 심평원 통보 내역 확인 후 별도 적용 (새울시스템 → 보건의료 자원통합신고 → 심평원 인력변경 신고내역)	상세신고내역을 전속기준으로 재산정·통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기타 인력은 신고 인원수로 통보)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적용함에 따라 의료법 제92조에 따른 과태료는 미부과

연번	구분		신고방법	처리절차	유의사항
4	약국 개설 등록 신청	개설등록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 개설 → 약국 개설 (서면) 관할 보건소로 등록신청서 제출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 ·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 (등록대장에 반영) · 심평원 통보 (심평원 신고로 간주) · 심평원 수정통보 요청시 확인 및 수정통보(새울시스템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 심평원 연계 이상내역)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요양기관기호 임시 부여) · 지자체 통보사항 확인 후 필요시 수정통보 요청	원스톱신고할 경우, 요양기관현황 신고시 인력 상세신고 생략 가능 · 다만 지자체가 수정하여 허가 시, 심평원에 다시 상세신고 필요
		요양기관 현황신고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 개설 → 지급계좌 신고 (서면) 관할 지역 심평원으로 신고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 신고처리(요양기관기호 확정) 후 요양기관 통보(공문 등)	신고 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건보공단 요양기관인증서 발급 신청 가능
5	약국 개설 등록사항 변경신청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변경 → 기본/진료과목 (기본현황변경 신고(약국용)) · 개설등록증명서 제출 생략 (서면) 관할 보건소로 변경신청서 제출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 ·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 (등록대장에 반영) · 심평원 통보 (심평원 신고로 간주) · 기타 변경사항인 경우, 서면신고건은 직권수정 (온라인 신고건은 사전검토 승인시 대장에 반영) · 심평원 수정통보 요청시 확인 및 수정통보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 지자체 통보사항 확인 후 필요시 수정통보 요청	주개설자 ↔ 공동개설자 변경은 지자체 신청사항이 아니므로 심평원에서 신고처리하고 지자체 대장에 자동 반영됨 · 심평원은 새 요양기관 기호에 지자체 개설등록 정보 자동 이관(기관현황, 개설자현황)
6	의료 기관 휴 · 폐업 신고	1개월 이상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휴·폐업 (서면) 관할 보건소로 신고서 제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진료기록부 직접 보관시 제19호서식 포함)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 ·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 (신고·허가대장에 반영) · 심평원 통보 (심평원 신고로 간주) ·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접수시 허가 후 휴·폐업 처리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로 수정신고 · 지자체는 신고처리 후 심평원 통보(심평원에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1개월 미만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휴·폐업 (서면) 관할 지역 심평원으로 신고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휴업 개시전, 1개월 이상 휴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자체로 신고 · 지자체는 신고처리 후 심평원 통보(심평원에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연번	구분		신고방법	처리절차	유의사항
7	약국 휴·폐업 신고	1개월 이상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휴·폐업 • 개설등록증명서 제출 생략 (서면) 관할 보건소로 신고서 제출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 •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 (등록대장에 반영) • 심평원 통보 (심평원 신고로 간주)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휴업 개시 전, 휴업기간을 변경 하려는 경우 지자체로 수정신고 • 지자체는 개설등록증명서 이면기재사항 수정 등 처리 후 심평원 통보(심평원에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1개월 미만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휴·폐업 (서면) 관할 지역 심평원으로 신고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휴업 개시 전, 1개월 이상 휴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자체로 신고 • 지자체는 신고처리 후 심평원 통보(심평원에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8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설치 및 (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재)사용신고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변경 → 장비신고 →진방장치현황 신고 • 장비신고증명서 원본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신고 (허가)증 사본 제출 생략 • 방사선관계 종사자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사본 제출 가능 (서면) 관할 보건소로 신고서 제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 •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 (신고대장에 반영) • 심평원 통보 (심평원 신고로 간주) • 바코드 부착장비는 유효성 검증 (미부착 장비는 심평원으로 바코드 요청) 후 민원 처리 (심평원) 신고 접수 및 처리 • 지자체 통보사항 확인 후 필요시 수정통보 요청	온라인 신고 시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접수 선행 필요 바코드 필수요건(모델명, 제조년월, 신고(허가)번호) 변경시, 바코드 재부여 장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적용개시일은 지자체가 통보한 장비사용일(신고증명서 발부일자) 로 적용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해임 ·겸임 신고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변경 → 장비신고 → 진방장치인력 신고 (서면) 관할 보건소로 신고서 제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 6호서식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 • 사전검토 완료 및 민원처리 (신고대장에 반영)	
9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변경 → 장비신고 → 진방장치현황 신고 • 장비신고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서면) 관할 보건소로 신고서 제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 5호서식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 •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 (신고대장에 반영) • 심평원 통보(개설자, 소재지 변경인 경우 심평원 신고로 간주) • 기타 변경사항인 경우, 서면신고건은 직권수정 (온라인 신고건은 사전검토 승인시 대장에 반영)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 지자체 장비개설자 변경 (주개설자→공동개설자 변경 포함)시 변경된 요양기관기호에 장비정보 반영	바코드 필수요건(모델명, 제조년월, 신고(허가)번호) 변경시, 바코드 재부여 개설자 변경일은 의료기관 개설변경일자과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 장비관련 변경사항의 변경일은 실제변경이 발생한 날로 적용 (단, 관내 이전인 경우는 처리일) 장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적용개시일은 지자체가 통보한 장비사용일로 적용 (소재지 이전일은 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결과로 달리 적용 가능)

연번	구분		신고방법	처리절차	유의사항
1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 이전·폐기신고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변경 → 장비신고 → 진방장치현황 신고 • 장비신고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서면) 관할 보건소로 신고서 제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 2호서식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 •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 (등록대장에 반영) • 심평원 통보 (심평원 신고로 간주)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사용중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적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음 장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적용종료일은 지자체가 통보한 장비사용중지일로 적용
11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변경 → 장비신고 → 특수장비현황 신고 • 장비등록증명서 원본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신고 (허가)증 사본,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개설허가증) 사본, 장비관련 인력 면허자격증 사본 제출 생략 •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제출 가능 (서면) 관할 보건소로 등록신청서 제출 •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 •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 (등록대장에 반영) • 심평원 통보 (심평원 신고로 간주) • 바코드 부착장비는 유효성 검증(미부착 장비는 심평원으로 바코드 요청) 후 민원 처리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 지자체 통보사항 확인 후 필요시 수정통보 요청	바코드 필수요건(모델명, 제조년월, 신고(허가)번호) 변경시, 바코드 재부여
12	특수 의료 장비 시설 · 인력 등록 사항 변경 통보	특수 의료장비 인력등록 사항 변경통보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변경 → 장비신고 → 특수장비현황 신고 • 장비등록증명서 원본 및 장비관련인력 면허자격증 사본 제출 생략 (서면) 관할 보건소로 통보서 제출 •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 •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 (등록대장에 반영) • 심평원 통보(개설자, 소재지, 설치장소 변경인 경우 심평원 신고로 간주) • 기타 변경사항인 경우, 서면신고건은 직권수정 (온라인 신고건은 사전검토 승인시 대장에 반영)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바코드 필수요건(모델명, 제조년월, 신고(허가)번호) 변경시, 바코드 재부여 개설자 변경일은 의료기관 개설변경일자과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 장비관련 변경사항의 변경일은 실제 변경이 발생한 날로 적용 (단, 관내 이전인 경우는 처리일) 장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적용개시일은 지자체가 통보한 장비사용일로 적용(소재지 이전일은 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결과로 달리 적용 가능)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용도/설치장소 변경통보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변경 → 장비신고 → 특수장비현황 신고 • 장비등록증명서 원본 및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개설허가증) 사본 제출 생략 (서면) 관할 보건소로 통보서 제출 •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지자체) 장비개설자 변경 (주개설자→공동개설자 변경 포함)시 변경된 요양기관기호에 장비 정보 반영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적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는 미부과
13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가 사용중지 통보		(온라인) 통합신고포털 로그인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변경 → 장비신고 → 특수장비현황 신고 • 장비등록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서면) 관할 보건소로 통보서 제출 •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7 호서식	(지자체) 민원접수 및 처리 •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 (등록대장에 반영) • 심평원 통보 (심평원 신고로 간주) (심평원) 신고접수 및 처리 (사용중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적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는 미부과

2.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범위,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①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약국 및 「약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용)를 말한다]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29.>

1.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약국 개설등록증 또는 한국회귀의약품센터 설립허가증 사본 1부
 - 나. 삭제 <2018. 9. 28.>
 - 다.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라. 통장 사본 1부
2. 의료장비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장비의 허가·신고·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장비의 검사나 검사면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장비를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16 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설자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신고인이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28.>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7. 24., 2018. 6. 29., 2018. 9. 28.>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5. 「약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
- ⑤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8. 9. 28.>
 1.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의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2.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3.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 ⑥ 심사평가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중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9. 28.>

1. 요양기관의 명칭, 기호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개설 신고(허가·등록)일, 폐업일
4. 사업자등록번호
5. 금융기관의 계좌명세 등

⑦ 요양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장비 등 요양기관의 현황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7. 24., 2018. 9. 28.>

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① 심사평가원은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등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하는 통보
2. 심사평가원이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하는 통보
3. 심사평가원이 법 제96조제2항 및 영 제69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영 별표 4의3 제2호마목·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4. 그 밖에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방법,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방법,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5. 7. 24.]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 및 이 고시 제3조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구축·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제3호 각 목의 정보보유기관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정보보유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보건복지부

나. 시·도 또는 시·군·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라.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정보의 보유기관

마. 그 밖에 정보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기관

제3조(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구축·운영)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하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시스템의 연계와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통합신고포털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하는 통보
 2. 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하는 통보
 3. 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3 제2호마목·카목·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4.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전속인력 및 의료인등 인원현황, 요양기관기호, 의료장비 바코드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시스템 연계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그 정보를 제공 받는 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정보보유기관은 정보시스템 연계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수정·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조회하여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변경·휴업·폐업에 대한 신고·허가·등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신고·등록·변경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등에 대한 자격·면허 및 행정처분
 2.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3.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개설·변경·휴업·폐업현황
 4.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등에 대한 허가·신고현황

제5조(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사무의 처리) ①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자(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신고·신청 또는 통보(이하 “신고등”이라 한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무의 수리·등록·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이하 “사전검토”라 한다)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출 서류와 같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및 「의료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개설(변경)허가 및 폐업·휴업의 신고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변경등록신청 및 폐업 등의 신고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변경 통보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사전검토 요청이 있으면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사전검토 결과를 통합신고포털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 결과를 통보한 때에 신청인이 신고등을 한 것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 후 신청인이 그에 대한 증명서 등을 통합신고포털에서 직접 출력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그 출력한 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1. 신고등의 사무
 2. 「약사법」 제23조제5항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예외지역 개설 확인증 교부에 관한 사무
-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연계정보 운영·관리) ① 정보보유기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통보, 제공 등(이하 “통보등”이라 한다)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 ② 정보보유기관은 연계된 정보시스템으로 통보등을 받은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보유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조치한 결과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심사평가원은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사평가원은 이 고시에 따른 보건의료자원 정보의 연계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협의회는 정보보유기관, 의료관련 단체 등에 속한 자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제도 정비 등 운영 여건 조성에 관한 업무
 2. 정보시스템 연계 기준, 방법, 절차, 서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정보 연계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개최,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제9조(교육)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와 정보시스템 연계·활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행정관리 등) ①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와 정보시스템 연계와 관련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유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정보보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통합신고포털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제정 2015. 11. 5〉

정보시스템 연계의 대상이 되는 정보 등(제4조제2항 관련)

정보보유기관	연계 정보	정보이용기관
법무부	출입국자명부 정보 또는 출입국 기록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정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등 면허자격정보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인등 행정처분정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별 제조(수입) 허가·인증·신고정보	
시·도	간호조무사 자격 및 행정처분정보	
	요양보호사 자격 및 행정처분정보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 행정처분정보	
시·군·구	조리사 면허 및 행정처분정보	
	의료기관 행정처분정보	
	약국 행정처분정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정보	

[별표 2] 〈제정 2018. 10. 4〉

신청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제5조제5항 관련)

연번	신고등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및 「의료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의2서식(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3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4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료기관 개설허가증)
5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의2서식(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6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	「약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약국개설등록증)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양도·이전·사용중지 신고증명서)
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변경 통보 등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9	「약사법」 제23조제5항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 교부에 관한 사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별지 서식(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확인증)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매뉴얼

발 행 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
발 간 번 호 G000F55-2018-68
주 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발 행 일 2018년 10월
편집·인쇄 여성기업 금오사

※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으므로
무단으로 복사·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